

법원공보

2017. 2. 15. WED.



목 차

규 칙	247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249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252	민사소송비용규칙 일부개정규칙
	254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25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264	가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266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268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270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
	273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275	법관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내 규	277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해외연수 등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
	279	법원공무원증 및 증명서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
예 규	284	국외여비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287	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289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일부개정예규
	292	인사전산시스템 운용관리지침 일부개정예규
	294	사법보좌관 선발 및 운용에 관한예규 일부개정예규
	296	회생위원 인사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298	법원공무원 평정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305	법원장 및 지원장의 재판업무 담당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예규
	307	성과상여금 지급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315	감사업무 관련사항 신속보고지침 일부개정예규
	317	집행절차에서의 보관업자 등록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322	노무자등을 보조자로 사용하는 집행사건에 있어서의 노무자등의 관리지침 일부개정예규
	326	집행관사무소에 비치할 각종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329	수신자기호 부여예규 일부개정예규
	333	법원공무원 휴가업무예규 일부개정예규
신법령 목록	342	
인 사	347	
공 고	361	
공지사항	381	

● 규 칙

◎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710호 2017. 2. 2. 공포)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제16조로 하고,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고충처리위원회) ① 각급 법원의 장은 소속 법관들의 고충 상담 및 처리를 위하여 판사회의의 의견을 들어 그 일부 구성원으로 구성되는 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각급 법원의 내규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5조(고충처리위원회)

- ① 각급법원의 장은 소속 법관들의 고충 상담 및 처리를 위하여 판사회의의 의견을 들어 그 일부 구성원으로 구성되는 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각급 법원의 내규로 정한다.

제15조(내규에의 위임)

제16조(내규에의 위임)

(생 략)

(현행 제15조와 같음)

◎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711호 2017. 2. 2. 공포)

민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진술 보조) ① 법 제143조의2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술보조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없어야 한다.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그 밖에 동거인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 또는 신뢰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과 법 제143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은 심급마다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법 제143조의2제1항에 따른 법원의 허가를 받은 진술 보조인은 변론기일에 당사자 본인과 동석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때 당사자 본인은 진술보조인의 행위를 즉시 취소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1. 당사자 본인의 진술을 법원과 상대방,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증개하거나 설명하는 행위
 2. 법원과 상대방, 그 밖의 소송관계인의 진술을 당사자 본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증개하거나 설명하는 행위
-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진술보조인이 한 증개 또는 설명행위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직접 진술보조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 ⑤ 진술보조인이 변론에 출석한 때에는 조서에 그 성명을 기재하고, 제3항에 따라 증개 또는 설명행위를 한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⑥ 법원은 법 제143조의2제2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 당사자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 규칙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신 설〉

개 정 안

제30조의2(진술 보조)

- ① 법 제143조의2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술보조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없어야 한다.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그 밖에 동거인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 또는 신뢰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과 법 제143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은 심급마다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법 제143조의2제1항에 따른 법원의 허가를 받은 진술보조인은 변론기일에 당사자 본인과 동석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때 당사자 본인은 진술보조인의 행위를 즉시 취소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1. 당사자 본인의 진술을 법원과 상대방,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중개하거나 설명하는 행위
 2. 법원과 상대방, 그 밖의 소송관계인의 진술을 당사자 본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중개하거나 설명하는 행위
-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진술보조인이 한 중개 또는 설명행위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직접 진술보조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 ⑤ 진술보조인이 변론에 출석한 때에는 조서에 그 성명을 기재하고, 제3항에 따라 중개 또는 설명행위를 한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⑥ 법원은 법 제143조의2제2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 당사자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민사소송비용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712호 2017. 2. 2. 공포)

민사소송비용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3항의 금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소송목적의 값, 사건의 특성과 난이도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소송서류의 서기로 및 도면의 작성료)	제2조(소송서류의 서기로 및 도면의 작성료)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3항의 금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소송목적의 값, 사건의 특성과 난이도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다.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713호 2017. 2. 2. 공포)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 중 “1000분의 35를 곱하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비율을 곱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금융기관 계좌이체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경우 : 1000분의 35
2. 그 외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 1000분의 8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에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1조(소송비용 등의 납부 등)	제41조(소송비용 등의 납부 등)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법원행정처장은 이용수수료를 당사자가 납부할 인지액, 송달료 그 밖에 소송행위에 필요한 비용 상당액에 <u>1000분의 35</u> 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전자소송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② ----- ----- ----- <u>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u> ----- -----.
<신 설>	1. <u>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금융기관 계좌이체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경우 : 1000분의 35</u>
<신 설>	2. <u>그 외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 1000분의 80</u>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714호 2017. 2. 2. 공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법원”을 각각 “회생법원”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 중 “지방법원장”을 각각 “회생법원장”으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원

관리위원회 설치법원	서울회생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	--

* 법 부칙에 따라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는 지방법원에 관리위원회를 둠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규칙 시행 당시에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에 회생법원의 관할에 속한 사건 중 이미 확정되었거나 보존된 서울중앙지방법

원의 사건기록은 이 규칙 시행 후에는 서울회생법원으로 이관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행정법원 및 위 지원”을 “행정법원, 회생법원 및 위 지원”으로 한다.

②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회생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분장사무)

회생법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는 별표 5의4와 같이 한다.

별표 4의1 중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사무국란 및 민사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신청과, 민사집행과, 기록관리과
	민사국	민사항소과, 민사합의1과, 민사합의2과, 민사단독1과, 민사단독2과, 민사단독3과, 민사소액과

별표 5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5의4]

회생법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표

과 명	분장사무
총 무 과	서무·인사·관인과 도서의 관수·문서·연금·기획·통계 및 회계에 관한 사항과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파 산 과	1. 개인회생사건의 접수 및 이와 관련된 각종 신청·비송사건의 접수 2. 법인·일반회생사건, 법인파산사건, 개인파산·면책사건, 국제도산사건의 접수처리 및 이와 관련된 각종 신청·비송사건의 접수처리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의 회사정리·화의사건의 처리 4. 집회 및 심문기일의 참여 5. 기록 및 문서의 작성처리와 기록·부책의 보존에 관한 사항 6. 채권신고 접수, 조사에 관한 사항
개 인 회 생 과	1. 개인회생사건 처리 및 이와 관련된 각종 신청·비송사건의 처리 2. 집회 및 심문기일의 참여 3. 기록 및 문서의 작성처리와 기록·부책의 보존에 관한 사항 4. 개인회생사건의 회생위원 업무에 관한 사항

과 명	분장사무
	5. 채권신고 조사에 관한 사항
※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방법원의 회생법원 사무국 파산과, 개인회생과의 분장사무는 지방법원 사무국 민사신청과에서 관장한다.	

③ 국고금관리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기관별란 중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을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으로 한다.

별표 2의 기관별란 중 “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을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및 회생법원”으로 한다.

④ 등기특별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기관별란 중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제외)”을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제외)”로 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물품관리법에 의한 물품관리관 등 지정

관서별	회계별	회계직명	총괄물품관리관	물품관리관	분임물품관리관	대리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대리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
대법원	등기특별	행정관리실장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	”	행정관리실장 (법원시설 확충 관련사항 제외, 다만, 각종 비·소모품에 관한 사항 포함)	기획총괄심의관 (법원시설 확충 관련사항. 다만, 각종 비·소모품에 관한 사항 제외)	재무담당관	재무담당관실 재무담당 사무관 (법원시설 확충 관련사항 제외)	시설담당관실 재무담당 사무관 (법원시설 확충 관련사항)	재무담당관실 재무담당 주사(보)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	”		사무국장		총무과장	총무과 재무담당사무			물품출납공무원이 아닌,	등기과장(후견등기 관련 제외),

관서별	회계 회계별	회계 직명	총 괄 물 품 관 리 관	물 품 관 리 관	분 임 물 품 관 리 관	대 리 물 품 관 리 관	물 품 출 납 공 무 원	분 임 물 품 출 납 공 무 원	대 리 물 품 출 납 공 무 원	물 품 은 용 관
(행정법원, 회생법원 제외)							관 또는 주사(보)		재무담당 선임자	가족관계등록과장 (후견등기 관련, 가족관계등록계만 설치된 곳은 선입후견등기관)
지원 및 가정지원		"			사무과장, 단 사무국이 설치된 지원은 사무국장			총무(사무)과 재무담당 주사(보)		등기과장(후견등 기 관련 제외, 등기계만 설치된 곳은 선입등기관), 가족관계등록과장 (후견등기 관련, 가족관계등록계만 설치된 곳은 선입후견등기관)
등기소		"								등기소장

별표 3의 관직지정란 중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서울행정법원 제외)”을 “세입세출외현금출
납공무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제외)”로 한다.

⑤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기관란 중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을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
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으로 한다.

⑥ 법정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지방법원장(가정법원장 또는 행정법원장을 포함한다)”을 “지방법원장(가정법
원장, 행정법원장 또는 회생법원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⑦ 비밀보호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가정법원장 및 행정법원장”을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으로
한다.

제82조제3항제1호 중 “행정법원 각 총무과장”을 “행정법원, 회생법원 각 총무과장”으로 한다.

⑧ 법원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청인란 중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을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으로 하고, 직인란 중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을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으로 한다.

⑨ 법원정보공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제1항 중 “행정법원, 법원행정처”를 “행정법원, 회생법원, 법원행정처”로 한다.

제19조 중 “행정법원, 사법연수원”을 “행정법원, 회생법원, 사법연수원”으로 한다.

⑩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4항제2호 본문 중 “행정법원, 지방법원 지원,”을 “행정법원, 회생법원, 지방법원 지원,”으로 한다.

제34조제7항제3호 중 “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을 “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회생법원”으로 한다.

제37조의2제2항 본문 중 “행정법원, 지방법원 지원,”을 “행정법원, 회생법원, 지방법원 지원,”으로 한다.

⑪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행정법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을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으로 한다.

⑫ 법원감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정기일반사무감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정기일반 사무감사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고등법원, 특허법원	연 1회	
	고등법원	총무과	지방법원 및 그 지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연 1회	

⑬ 법관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행정법원장 및 법원도서관장”을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 및 법원도서관장”으로 한다.

제11조 중 “가정법원 또는 행정법원”을 “가정법원, 행정법원 또는 회생법원”으로 한다.

⑭ 법원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행정법원장”을 “행정법원장·회생법원장”으로 한다.

별표 3의 수입자란 중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을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으로 한다.

⑮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목표달성도 평가자(제6조제1항 관련)

직급		구분		1차 평가자	2차 평가자
3급 이상				법원행정처차장 각급법원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포함)	법원행정처장
4급 (3·4급 복수직 포함), 연구관 (법원공무원 규칙 제25조의2 연구관 제외)	법원행정처		소속실·국장		법원행정처 차장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사무국장		원장(관장)
	고등법원, 특허법원		사무국장		법원장
	지방법원	본원	소속 국장		법원장
	가정법원	본원 소속 등기소	소속 국장		법원장
	행정법원	지원	지원장		법원장
	회생법원	지원 소속 등기소	지원장		법원장

(피평가자와 1차평가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2차 평가자가 1차 평가자를 겸하고, 사법보좌관에 대한 평가는 업무감독 법관의 의견을 들어 평가한다.)

별표 2의2 중 기관별란 중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을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제13조(설치법원 및 법원간의 공조)

- ① 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지방법원은 별표 1과 같다.
- ② 지방법원은 다른 지방법원의 관리위원회에 법 제17조제1항 및 이 규칙 제22조, 제27조의 사무수행을 촉탁할 수 있다.

제14조(구성)

- ① ~ ② (생 략)
- ③ 지방법원장이 관리위원을 위촉하거나 해촉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장)

- ① 위원장은 당해 관리위원회 소속 관리위원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지명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② ~ ④ (생 략)

제21조(간사 및 직원)

- ① (생 략)
- ② 지방법원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할 간사 및 직원을 지정하여 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 정 안

제13조(설치법원 및 법원간의 공조)

- ① -----
-----회생법원-----.
- ② 회생법원-----회생법원-----
-----.

제14조(구성)

- ① ~ ②(현행과 같음)
- ③ 회생법원장-----
-----.

제15조(위원장)

- ① -----
-----회생법원장-----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간사 및 직원)

- ① (생 략)
- ② 회생법원장-----

-----.

현행

[별표 1]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원

관리위원회 설치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	--

개정안

[별표 1]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원

관리위원회 설치법원	서울회생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	--

* 법 부칙에 따라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는 지방법원에 관리위원회를 둠

◎ 가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715호 2017. 2. 2. 공포)

가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제1항 중 “처분과 변경, 면접교섭권의 제한과 배제 및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을 “처분과 변경 및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자(子)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 또는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의 심판”을 “제1항의 심판”으로 한다.

② 면접교섭권의 처분 또는 제한·배제·변경에 관한 심판은 다음 각 호의 자들 상호간에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1. 부(父)와 모(母)
2.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父) 또는 모(母)의 직계존속과 자를 직접 양육하는 부(父) 또는 모(母)

제100조 중 “제99조제1항”을 “제99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9조(당사자)</p> <p>① <u>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 면접교섭권의 제한과 배제 및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심판은 부모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u></p> <p>〈신 설〉</p> <p>② <u>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 또는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의 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부모 아닌 자가 자를 양육하고 있을 때에는 그 자를 공동상대방으로 하여 자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u></p> <p>제100조(자의 의견의 청취)</p> <p><u>제99조 제1항에 규정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 자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가정법원은 심판에 앞서 그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자(子)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子)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子)의 복지를 해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제99조(당사자)</p> <p>① -----<u>처분과 변경 및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u>-----</p> <p>-----</p> <p>-----</p> <p>② <u>면접교섭권의 처분 또는 제한·배제·변경에 관한 심판은 다음 각 호의 자들 상호간에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u></p> <p>1. <u>부(父)와 모(母)</u></p> <p>2. <u>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父) 또는 모(母)의 직계존속과 자(子)를 직접 양육하는 부(父) 또는 모(母)</u></p> <p>③ <u>제1항의 심판</u>-----</p> <p>-----</p> <p>-----</p> <p>-----</p> <p>-----</p> <p>-----</p> <p>-----</p> <p>제100조(자의 의견의 청취)</p> <p><u>제99조제1항 및 제2항</u>-----</p> <p>-----</p> <p>-----</p> <p>-----</p> <p>-----</p> <p>-----</p> <p>-----</p>

◎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716호 2017. 2. 2. 공포)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서울동부지방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등기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표

명칭			관할구역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시·도명	시·구·군명
서울동부		등기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별표 중 부산지방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등기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표

명칭			관할구역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시·도명	시·구·군명
부산		등기과	부산광역시	동래구, 연제구(단, 상업등기, 선박등기 및 동산·채권담보등기는 부산광역시 전지역)
		부산진	"	부산진구, 동구
		금정	"	금정구
		중부산	"	중구, 서구, 영도구
	동부	등기과	"	해운대구, 기장군
		남부산	"	남구, 수영구
	서부	등기과	"	사하구, 강서구
		북부산	"	북구, 사상구

부 칙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별표]

등기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표

명칭			관할구역	
지방 법원	지원	등기소	시·도명	시·구·군명
〈이상 생략〉				
서울 동부		〈신 설〉		
		등기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진구
		강동	"	강동구
		송파	"	송파구
〈이하 생략〉				

[별표]

등기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표

명칭			관할구역		
지방 법원	지원	등기소	시·도명	시·구·군명	
〈이상 생략〉					
부산		등기과	부산광 역시	동래구, 연제구 (단, 상업등기, 선박 등기 및 동산·채권 담보등기는 부산광 역시 전지역)	
		부산진	"	부산진구, 동구	
		북부산	"	북구, 사상구	
		사하	"	사하구	
		강서		강서구	
		금정	"	금정구	
		중부산	"	중구, 서구, 영도구	
	동부	등기과	"	해운대구, 기장군	
		남부산	"	남구, 수영구	
	〈신 설〉				
	〈이하 생략〉				

개 정 안

[별표]

등기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표

명칭			관할구역	
지방 법원	지원	등기소	시·도명	시·구·군명
〈이상 생략〉				
서울 동부		등기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삭 제〉		
		〈삭 제〉		
		〈삭 제〉		
〈이하 생략〉				

[별표]

등기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표

명칭			관할구역	
지방 법원	지원	등기소	시·도명	시·구·군명
〈이상 생략〉				
부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서부지원 소속으로 변경〉		
		〈삭 제〉		
		〈삭 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동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서부	등기과	"	사하구, 강서구
북부산		"	북구, 사상구	
〈이하 생략〉				

◎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717호 2017. 2. 2. 공포)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서울동부지방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등기관서별 분류번호

등 기 관 서 명	번 호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401

별표 2 중 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 사하등기소란을 각각 삭제하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란 다음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등기관서별 분류번호

등 기 관 서 명	번 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1849

부 칙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별표 2]

등기관서별 분류번호

등기관서명	번호
〈신설〉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관	2401
” 강동등기소	2441
” 송파등기소	2442

[별표 2]

등기관서별 분류번호

등기관서명	번호
부산지방법원 등기관	1801
동부지원	1811
〈신설〉	
” 부산진등기소	1841
” 남부산등기소	1843
” 북부산등기소	1844
” 금정등기소	1847
” 강서등기소	1849
” 사하등기소	1850
” 중부산등기소	1851

개정안

[별표 2]

등기관서별 분류번호

등기관서명	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관	2401
〈삭제〉	
〈삭제〉	
〈삭제〉	

[별표 2]

등기관서별 분류번호

등기관서명	번호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1849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현행과 같음〉	

◎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718호 2017. 2. 2. 공포)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시철도법」 제5조의2제3항, 「도로법」 제50조제5항 및 「전기사업법」 제89조의2제3항”을 “「도시철도법」 제12조제3항, 「도로법」 제28조제5항, 「전기사업법」 제89조의2제3항 및 「농어촌정비법」 제110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6호의 도시철도건설자(이하 “도시철도건설자”라 한다), 「도로법」 제20조의 도로 관리청(이하 “도로 관리청”이라 한다) 및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의 전기사업자(이하 “전기사업자”라 한다)”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7호의 도시철도건설자(이하 “도시철도건설자”라 한다), 「도로법」 제2조제5호의 도로관리청(이하 “도로관리청”이라 한다),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의 전기사업자(이하 “전기사업자”라 한다) 및 「농어촌정비법」 제10조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이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도로 관리청 및 전기사업자”를 “도로관리청, 전기사업자 및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로 한다.

제4조 중 “그 보다”를 “그보다”로, “근저당권등”을 “근저당권 등”으로,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등”을 “압류등기 또는 가압류등기 등”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농어촌정비법」 제110조의3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설정·이전등기에 관한 개정규정은 「농어촌정비법」(법률 제14480호, 2016. 12. 27. 시행) 시행 후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재결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5조의2제3항, 「도로법」 제50조제5항 및 「전기사업법」 제89조의2제3항에 따른 부동산등기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용·사용의 재결에 의한 구분지상권설정등기)

- ① 「도시철도법」 제3조제6호의 도시철도건설자(이하 “도시철도건설자”라 한다), 「도로법」 제20조의 도로 관리청(이하 “도로 관리청”이라 한다) 및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의 전기사업자(이하 “전기사업자”라 한다)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의 설정을 내용으로 하는 수용·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 그 재결서와 보상 또는 공탁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권리수용이나 토지사용을 원인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생략)

제3조(수용재결에 의한 구분지상권이전등기)

- ① 도시철도건설자, 도로 관리청 및 전기사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등기되어 있는 구분지상권을 수용하는 내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 그 재결서와 보상 또는 공탁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권리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생략)

개 정 안

제1조(목적)

----「도시철도법」 제12조제3항, 「도로법」 제28조제5항, 「전기사업법」 제89조의2제3항 및 「농어촌정비법」 제110조의3제3항-----
-----.

제2조(수용·사용의 재결에 의한 구분지상권설정등기)

- ① 「도시철도법」 제2조제7호의 도시철도건설자(이하 “도시철도건설자”라 한다), 「도로법」 제2조제5호의 도로관리청(이하 “도로관리청”이라 한다),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의 전기사업자(이하 “전기사업자”라 한다) 및 「농어촌정비법」 제10조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이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라 한다)-----

-----.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수용재결에 의한 구분지상권이전등기)

- ① -----도로관리청, 전기사업자 및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

-----.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제4조(강제집행 등과의 관계)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친 구분지상권설정등기 또는 제3조의 수용의 대상이 된 구분지상권설정 등기는 그 보다 먼저 마친 강제경매개시결정의 등기, 근저당권등 담보물권의 설정등기,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등에 기하여 경매 또는 공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말소하여서는 아니된다.

개 정 안

제4조(강제집행 등과의 관계)

 -----그보다-----
 -----근저당권 등-----압류등
기 또는 가압류등기 등-----

 -----.

◎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719호 2017. 2. 2. 공포)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제3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4호의 직책에 보임되었던 법관으로 위 각 직책 이외의 직책에 보임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법관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범위)	제2조(범위)
<p>법률 등에서 규정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보직에 보하여진 법관을 말한다. 다만, 법률 등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을 제외한다.</p>	<p>----- ----- ----- ----- -----.</p>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p>〈신 설〉</p>	<p>15. 제3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4호의 직책에 <u>보임되었던 법관으로 위 각 직책 이외의 직책에 보임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법관</u></p>

◎ 법관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720호 2017. 2. 2. 공포)

법관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원로법관) ① 대법원장은 법조경력 30년 이상인 판사 중에서 원로법관을 지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원로법관을 지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대법원장은 원로법관의 예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조의3(원로법관)

- ① 대법원장은 법조경력 30년 이상인 판사 중에서 원로법관을 지명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원로법관을 지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대법원장은 원로법관의 예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내 규

◎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해외연수 등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

(대법원내규 제476호 2017. 1. 31. 결재)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해외연수 등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제5조 (선발제외자)

- ① 해외파견 당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는 선발에서 제외한다.
1. 2.(생 략)
 3.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4. (생 략)
- ② · ③ (생 략)

개 정 안

제5조 (선발제외자)

- ① -----
-----.
1. 2.(현행과 같음)
 3. <삭 제>
 4. (현행과 같음)
- ② · ③ (현행과 같음)

◎ 법원공무원증 및 증명서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

(대법원내규 제477호 2017. 1. 31. 결재)

법원공무원증 및 증명서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및 제11조제2항 별표 3 발급대상 법관의 직위·직급표시란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제3조제4항 별표 4를 별지 2.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별표 3】

법원공무원증(신분증) 직위/직급 구분표(제3조제3항 및 제11조제2항 관련)

구 분	발급대상	직위/ 직급	직위·직급표시
공무원증 발급 대상자	법관	직위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원장(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특허법원 부장판사), 지방법원 부장판사(가정법원 부장판사, 행정법원 부장판사, 회생법원 부장판사), 판사로 직위를 구분 표시
	검사	”	·사법연수원부원장(검사장), ·사법연수원교수(부장검사 또는 검사)
	일반직	직위/ 직급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관리관~법원사무관으로 구분표시하고 법원주사, 법원주사보는 법원주사로, 법원서기, 법원서기보는 법원서기로, 연구직렬은 연구관, 연구사로 표시 ·기타 일반직의 경우도 법원사무직렬과 같은 방법으로 표시 ·일반임기제는 대체하고 있는 정원의 직급 명칭 부여 [예: 조사업무 일반임기제(7호) ⇒ 조사주사보(일반임기제)] ·전문임기제는 전문임기제로 표시하고 연봉등급 표시 [예: 전문임기제(마급)] ·전문경력관의 경우 전문임기제와 같은 방법으로 표시
	별정직	”	·담당업무 구분없이 모두 별정직으로 표시 ·상당계급 표시
	사법연수생	”	·사법연수생
	신분증 전자카드 발급 대상자	청원경찰	”
	조사위원	”	·조사위원
	법원조사관	”	·법원조사관
	상임 조정위원	”	·상임 조정위원
	특이심리민원인 전담 상담위원	”	·전담 상담위원

별지 2.

【별표 4】

법원공무원증(신분증) 발급번호 분류표(제3조제4항 관련)

발급대상	단위	번호	비고
대법원장	1	1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	2~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100	101~	
법원행정처 차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 사법연수원부원장	"	201~	
고등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	301~	
지방법원 부장판사, 가정법원 부장판사, 행정법원 부장판사, 회생법원 부장판사	1000	1001~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 판사	"	3001~	
지방법원 판사, 가정법원 판사, 행정법원 판사, 회생법원 판사	"	5001~	
일반직	10000	10001~	
별정직, 임기제(일반, 전문)	10000	30001~	
사법연수원생	"	50001~	
신분증 발급 대상자	"	60001~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별표 3]

법원공무원증(신분증) 직위/직급

구분표(제3조제3항 및 제11조제2항 관련)

구분	발급 대상	직위/직급	직위·직급표시
공무원증 발급 대상 자	법관	직위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원장(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특허법원 부장판사), 지방법원 부장판사(가정법원 부장판사, 행정법원 부장판사), 판사로 직위를 구분 표시
	검사	"	(생략)
	일반직	직위/직급	(생략)
	별정직	"	(생략)
	사법연수생	"	(생략)
신분 증 전자 카드 발급 대상 자	청원경찰	"	(생략)
	조사위원	"	(생략)
	법원조사관	"	(생략)
	상임 조정위원	"	(생략)
	특이심리민원인 전담 상담위원	"	(생략)

개정안

[별표 3]

법원공무원증(신분증) 직위/직급

구분표(제3조제3항 및 제11조제2항 관련)

구분	발급 대상	직위/직급	직위·직급표시
공무원증 발급 대상 자	법관	직위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원장(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u>회생법원장</u>), 고등법원 부장판사(특허법원 부장판사), 지방법원 부장판사(가정법원 부장판사, 행정법원 부장판사, <u>회생법원 부장판사</u>), 판사로 직위를 구분 표시
	검사	"	(현행과 같음)
	일반직	직위/직급	(현행과 같음)
	별정직	"	(현행과 같음)
	사법연수생	"	(현행과 같음)
신분 증 전자 카드 발급 대상 자	청원경찰	"	(현행과 같음)
	조사위원	"	(현행과 같음)
	법원조사관	"	(현행과 같음)
	상임 조정위원	"	(현행과 같음)
	특이심리민원인 전담 상담위원	"	(현행과 같음)

현행

[별표 4]

법원공무원증(신분증) 발급번호
분류표(제3조제4항 관련)

발급대상	단위	번호	비고
대법원장	1	1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	2~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100	101~	
법원행정처 차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사법연수원부원장	"	201~	
고등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	301~	
지방법원 부장판사, 가정법원 부장판사, 행정법원 부장판사	1000	1001~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 판사	"	3001~	
지방법원 판사, 가정법원 판사, 행정법원 판사	"	5001~	
일반직	10000	10001~	
별정직, 임기제(일반, 전문)	10000	30001~	
사법연수원생	"	50001~	
신분증 발급 대상자	"	60001~	

개정안

[별표 4]

법원공무원증(신분증) 발급번호
분류표(제3조제4항 관련)

발급대상	단위	번호	비고
대법원장	1	1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	2~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100	101~	
법원행정처 차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u>회생법원장</u> , 사법연수원부원장	"	201~	
고등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	301~	
지방법원 부장판사, 가정법원 부장판사, 행정법원 부장판사, <u>회생법원 부장판사</u>	1000	1001~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 판사	"	3001~	
지방법원 판사, 가정법원 판사, 행정법원 판사, <u>회생법원 판사</u>	"	5001~	
일반직	10000	10001~	
별정직, 임기제(일반, 전문)	10000	30001~	
사법연수원생	"	50001~	
신분증 발급 대상자	"	60001~	

예 규

◎ 국외여비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101호 2017. 1. 25. 결재)

국외여비업무 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3항 중 “(주)대한항공의 항공권”을 각각 “항공권”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2]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 기준〉

구 분	기 준
관리	- 비용의 지급 주체, 항공사와 관계없이 2006.3.1. 이후 공무상 여행에 의해 발생한 마일리지 * 공무상 여행에는 국내와 국외를 포함
활용	- 출장자 등은 항공권 예약 시 본인의 누적 마일리지를 확인하여 ‘보너스 항공권 확보’에 우선 활용하고, 보너스 항공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 ‘좌석승급(업그레이드)’에 활용한다. * 본인의 누적 마일리지는 ‘나의인사정보-항공마일리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공무상 여행자는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적립되거나 이를 활용하는 등으로 마일리지가 변경된 경우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마일리지를 상세 조회하여 이를 ‘나의인사정보-항공마일리지’에 지체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 이때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된 마일리지와 사적 여행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를 엄격히 구별하여야 한다. - 보너스 항공권 활용 기준: 1등 정액, 중간(비즈니스) 정액 및 2등(이코노미) 정액 지급대상자가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해당 좌석의 보너스 항공권을 구매한다. - 좌석승급(업그레이드) 기준: 1등 정액, 중간(비즈니스) 정액 지급대상자가 아래 단계의 좌석에 해당하는 정액을 지급받고,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1등석이나 중간(비즈니스)석으로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별표 1의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2등(이코노미) 정액 지급대상자가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공무상 여행을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한 단계 높은 중간(비즈니스)석의 보너스 항공권을 확보하거나, 2등(이코노미) 정액을 지급받고 중간(비즈니스)석으로 좌석을 조정할 수 있다(이는 항공운임을 절약한 경우가 아니므로 제6조제2항에 따른 일비의 추가 지급은 적용되지 않는다). · 국제회의 등(단순 현지조사, 세미나 참석 등은 제외)의 대표단 일원 · 항공여행 시간이 5시간(편도)이상 · 이코노미 좌석 탑승이 곤란한 질환(척추질환 등) 보유 * 진단서 등 건강상태 입증자료 제출 필요 · 동행하는 1등 정액 또는 중간(비즈니스) 정액 지급대상자와 떨어져 혼자 이코노미 좌석에 탑승 · 3년 이내에 정년퇴직 예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제5조(항공권 구매권한)

- ① 공무상 여행 시 정부항공운송의뢰(GTR)를 통하여 (주)대한항공의 항공권 구매를 할 경우에는 공적 항공마일리지, 규칙 제12조의2 제1항의 항공권 구매권한, 여비예산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생 략)
- ③ GTR을 통하여 (주)대한항공의 항공권을 이용할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는 항공마일리지 가 별도로 적립되지 않는다.
- ④ (생 략)

[별표 2]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 기준〉

구 분	기 준
관 리	(생 략)
활 용	- (생 략) * 본인의 누적 마일리지는 '나의인사정보-항공 마일리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나, 이는 1년 단위로 업데이트 되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마일리지는 반영하지 못하며, 출장자 등의 신고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최종적으로는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본인에게 적립된 마일리지를 상세 조회하여야 한다. 이때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된 마일리지와 사적 여행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를 엄격히 구별하여야 한다. - (이하 생 략)

개 정 안

제5조(항공권 구매권한)

- ① -----
-----항공권-----

-----.
- ② (현행과 같음)
- ③ -----항공권-----

-----.
- ④ (현행과 같음)

[별표 2]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 기준〉

구 분	기 준
관 리	(현행과 같음)
활 용	- (현행과 같음) * 본인의 누적 마일리지는 '나의인사정보-항공 마일리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공무상 여행자는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적립되거나 이를 활용하는 등으로 마일리지가 변경된 경우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마일리지를 상세 조회하여 이를 '나의인사정보-항공 마일리지'에 지체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 이때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된 마일리지와 사적 여행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를 엄격히 구별하여야 한다. - (이하 현행과 같음)

◎ 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102호 2017. 1. 31. 결재)

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본문 중 “6개월 또는 1년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한다”를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개월 또는 1년으로 정하여 지정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육아기 근무시간 단축근무)	제26조(육아기 근무시간 단축근무)
① (생 략) ②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근무 기간은 <u>6개월</u> 또는 <u>1년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한다.</u> 다만, 희망하는 경우 <u>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총 단축근무 기간은 해당 법관의 육아휴직기간을 합산하여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u> ③ ~ ⑤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 <u>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개월 또는 1년으로 정하여 지정한다.</u> ----- ----- -----. ③ ~ ⑤ (현행과 같음)

◎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103호 2017. 1. 31. 결재)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별표 2 기관별란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별표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비서의 근무성적 평가자(제24조제1항 관련)

기관별		구분	평가대상자	1차 평가자	2차 평가자
대법원	대법원장실	2급3급 상당	법원행정처 차장	법원행정처장	
		4급5급 상당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차장	
		6급 상당 이하	선임비서관	비서실장	
	대법관실	4급 상당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차장	
		6급 상당 이하	소속 비서관	비서실장	
	수석재판연구관실	6급 상당 이하	총무담당관	행정관리실장	
법원 행정처	행정처장실	4급 상당	기획조정실장	법원행정처 차장	
		6급 상당 이하	소속비서관	행정관리실장	
	행정처차장실	6급 상당 이하	총무담당관	행정관리실장	
	기획조정실장실	6급 상당 이하	기획제1심의관	기획조정실장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도서관, 법원공무원교육원		5급 상당	사무국장	원장(관장)	
		6급 상당 이하	총무과장	사무국장	
고등법원, 특허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5급 상당	사무국장	법원장	
		6급 상당 이하	총무과장	사무국장	
지방법원	본원	5급 상당	사무국장	법원장	
		6급 상당 이하	총무과장	사무국장	
	지원	6급 상당 이하	지원 총무과장	지원 사무국장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별표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비서의 근무성적
평가자(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평가대상자	1차 평가자	2차 평가자
기관별	대법원 장실	(생 략)		
	대법관실	(생 략)		
	수석재판 연구관실	(생 략)		
법 원 행정처	행정 처장실	(생 략)		
	행정처차 장실	(생 략)		
	기획조정 실장실	(생 략)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도서관, 법원공무원교육원		(생 략)		
고등법원, 특허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5급 상당	사무국장	법원장	
	6급 상당 이하	총무과장	사무국장	
지방법원	본 원	(생 략)		
	지 원	(생 략)		

개 정 안

[별표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비서의 근무성적
평가자(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평가대상자	1차 평가자	2차 평가자
기관별	대법원 장실	(현행과 같음)		
	대법관실	(현행과 같음)		
	수석재판 연구관실	(현행과 같음)		
법 원 행정처	행정 처장실	(현행과 같음)		
	행정 처차장실	(현행과 같음)		
	기획조정 실장실	(현행과 같음)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도서관, 법원공무원교육원		(현행과 같음)		
고등법원, 특허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5급 상당	사무국장	법원장	
	6급 상당 이하	총무과장	사무국장	
지방법원	본 원	(현행과 같음)		
	지 원	(현행과 같음)		

◎ 인사전산시스템 운용관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104호 2017. 1. 31. 결재)

인사전산시스템 운용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행정법원 및 지원”을 “행정법원, 회생법원 및 지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용어의 정의)</p> <p>1. (생략)</p> <p>2. “각급 법원”이란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u>행정법원 및 지원</u>을 말한다.</p> <p>3. ~ 10.(생략)</p>	<p>제2조(용어의 정의)</p> <p>1. (현행과 같음)</p> <p>2. ----- ----- -----<u>행정법원, 회생법원 및 지원</u>-----.</p> <p>3. ~ 10.(현행과 같음)</p>

◎ 사법보좌관 선발 및 운용에 관한예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105호 2017. 1. 31. 결재)

사법보좌관 선발 및 운용에 관한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가정법원장 및 행정법원장”을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및 회생법원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선발계획)</p> <p>① 법원행정처장은 사법보좌관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사법보좌관 선발계획서(“선발계획서”라고 한다. 이하 같다)를 사법연수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 <u>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및 행정법원장</u>에게 송부하여야 한다.</p> <p>② ~ ④ (생략)</p>	<p>제2조(선발계획)</p> <p>① ----- ----- ----- -----, <u>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및 회생법원장</u>-----.</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 회생위원 인사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106호 2017. 1. 31. 결재)

회생위원 인사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방법원장”을 “지방법원장 및 회생법원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자격 및 선정) 소속기관장(지방법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소속 법원사무관 중에서 업무수행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이 우수한 자를 회생위원의 업무를 담당할 자(이하 “회생위 원업무담당자”라고 한다)로 선정하여야 한다.</p>	<p>제2조(자격 및 선정) -----(지방법원장 및 회생법원장-----) ----- ----- ----- -----.</p>

◎ 법원공무원 평정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107호 2017. 1. 31. 결재)

법원공무원 평정업무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II1다 별표의 행정법원란 다음에 회생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 1]

목표달성도 평가자(제6조제1항 관련)

직급		구분		1차 평가자	2차 평가자
3급 이상				법원행정처차장 각급법원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포함)	법원행정처장
4급 (3·4급 복수직 포함), 연구관 (법원공무원규 칙 제25조의2 연구관 제외)	법원행정처		소속실·국장		법원행정처 차장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사무국장		원장(관장)
	고등법원, 특허법원		사무국장		법원장
	지방법원	본원	소속 국장		법원장
	가정법원	본원 소속 등기소	소속 국장		법원장
	행정법원	지원	지원장		법원장
	회생법원	지원 소속 등기소	지원장		법원장

(피평가자와 1차 평가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2차 평가자가 1차 평가자를 겸하고, 사법보좌관에 대한 평가는 업무감독 법관의 의견을 들어 평가한다.)

II2가4) 별표의 행정법원란 다음에 회생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 2]

기관별		구 분	평정대상자	평 정 자	확 인 자	
법원행정처			5급	소속실·국장	차장	
			6급 이하	소속과장	소속실·국장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5급	사무국장	원장(관장)	
			6급 이하	소속과장	사무국장	
고등법원, 특허법원			5급	사무국장	법원장	
			6급 이하	소속과장	사무국장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본 원		5급	소속국장	법원장	
			6급 이하	소속과장	소속국장	
	지 원	사무국을 둔 지원 소속		5급	지원 사무국장	지원장
				6급 이하	소속과장	지원 사무국장
		사무국을 두지 않은 지원	사무과장이 4급인 경우	5급 이하	지원 사무과장	지원장
			사무과장이 5급인 경우	5급	지원장	법원장
	본원 소속		5급	사무국장	법원장	
			6급 이하	총무과장	사무국장	
	시· 군 법원	사무국을 둔 지원 소속		5급	지원 사무국장	지원장
				6급 이하	지원 총무과장	지원 사무국장
		사무국을 두지 않은 지원 소속	사무과장이 4급인 경우	5급 이하	지원 사무과장	지원장
			사무과장이 5급인 경우	5급	지원장	법원장
	본원 소속		5급(6급 이하 소장 포함)	사무국장	법원장	
			6급 이하 (소장 제외)	소 장	사무국장	
	등 기 소	사무국을 둔 지원 소속		5급(6급 이하 소장 포함)	지원 사무국장	지원장
				6급 이하 (소장 제외)	소 장	지원 사무국장

별표 2의 행정법원란 다음에 회생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평정자와 확인자

기관별		구분		평정대상자	평정자	확인자	
법원행정처				가군	소속실·국장	차장	
				나군, 다군	소속과장	소속실·국장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가군	사무국장	원장(관장)	
				나군, 다군	소속과장	사무국장	
고등법원 특허법원				가군	사무국장	법원장	
				나군, 다군	소속과장	사무국장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본원		가군	소속국장	법원장	
				나군, 다군	소속과장	소속국장	
		지원	사무국을 둔 지원소속		가군	지원사무국장	지원장
					나군, 다군	소속과장	지원사무국장
			사무국을 두지 않은 지원	사무과장이 4급인 경우	가군, 나군, 다군	지원사무과장	지원장
				사무과장이 5급인 경우	가군	지원장	법원장
		시·군법원	본원소속		가군	사무국장	법원장
					나군, 다군	총무과장	사무국장
			사무국을 둔 지원소속		가군	지원사무국장	지원장
					나군, 다군	지원총무과장	지원사무국장
			사무국을 두지 않은 지원소속	사무과장이 4급인 경우	가군, 나군, 다군	지원사무과장	지원장
				사무과장이 5급인 경우	가군	지원장	법원장
등기국(소)	본원소속		가군	사무국장	법원장		
			나군, 다군	소장	사무국장		
	사무국을 둔 지원소속		가군	지원사무국장	지원장		
			나군, 다군	소장	지원사무국장		

별표 3의 참고사항 중 “관리위원의 1차 평가자는 관리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재판부의 재판장임(다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는 파산수석부의 재판장).”을 “관리위원의 1차 평가자는 관리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재판부의 재판장임.”으로 한다.

[별표 3]

임기제공무원의 정기 및 수시평가의 평가자(VIII. 2. 가. 관련)

평가대상	1차 평가자	2차 평가자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1호부터 3호까지	법원행정처 차장 또는 소속 기관장	법원행정처장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4호 및 5호와 전문임기제공무원 중 가급 및 나급	소속 실국장	법원행정처 차장 또는 소속 기관장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6호 내지 10호와 전문임기제공무원 중 다급부터 마감까지	소속 담당관과장	소속 실국장

- ※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6호부터 10호까지와 전문임기제공무원 중 다급부터 마감까지에 대한 평가자 중 사무국이 설치된 지원의 경우 1차 평가자는 소속과장이고, 2차 평가자는 지원 사무국장이며, 사무국이 설치되지 않은 지원의 경우 1차 평가자는 사무과장이고, 2차 평가자는 본원 사무국장임.
- ※ 관리위원의 1차 평가자는 관리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재판부의 재판장임.

부 칙

이 예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II1다

[별표 2의 1]

목표달성도 평가자(제6조제1항 관련)

직급	구분	1차평가자		2차평가자	
		1차평가자		2차평가자	
3급 이상	법원행정처차장 각급법원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 연구원장, 법원공무원 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포함)		법원행정 처 차장		
	법원행정처	소속실·국장	법원행정 처 차장		
4급 (3·4급 복수직 포함), 연구관 (법원공 무원 규칙 제25조 의2 연구관 제외)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 법원도서관		사무국장	원장(관장)	
	고등법원, 특허법원		사무국장	법원장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본원	소속 국장	법원장	
		소속 등기소	소속 국장	법원장	
		지원	지원장	법원장	
지원 소속 등기소		지원장	법원장		

(피평가자와 1차 평가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2차 평가자가 1차 평가자를 겸하고, 사법보좌관에 대한 평가는 업무감독 법관의 의견을 들어 평가한다.)

개정안

II1다

[별표 2의 1]

목표달성도 평가자(제6조제1항 관련)

직급	구분	1차 평가자		2차 평가자	
		1차 평가자		2차 평가자	
3급 이상	법원행정처차장 각급법원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 연구원장, 법원공무원 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포함)		법원행정 처 차장		
	법원행정처	소속실·국장	법원행정 처 차장		
4급 (3·4급 복수직 포함), 연구관 (법원공 무원 규칙 제25조 의2 연구관 제외)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 법원도서관		사무국장	원장(관장)	
	고등법원, 특허법원		사무국장	법원장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본원	소속 국장	법원장	
		소속 등기소	소속 국장	법원장	
		지원	지원장	법원장	
지원 소속 등기소		지원장	법원장		

(피평가자와 1차 평가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2차 평가자가 1차 평가자를 겸하고, 사법보좌관에 대한 평가는 업무감독 법관의 의견을 들어 평가한다.)

현행

II2가4) 평정자 및 확인자(규칙 별표2의2)

기관별		구분	평정대상자	평정자	확인자	
법원행정처			5급	소속실·국장	차장	
			6급 이하	소속과장	소속실·국장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5급	사무국장	원장(관장)	
			6급 이하	소속과장	사무국장	
고등법원, 특허법원			5급	사무국장	법원장	
			6급 이하	소속과장	사무국장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본원		5급	소속국장	법원장	
			6급 이하	소속과장	소속국장	
			5급	지원 사무국장	지원장	
	지원	사무국을 둔 지원 소속		6급 이하	소속과장	지원 사무국장
				5급 이하	지원 사무과장	지원장
		사무국을 둔 지원 소속	사무과장이 4급인 경우	5급 이하	지원 사무과장	지원장
			사무과장이 5급인 경우	5급	지원장	법원장
	시· 군 법원	본원 소속		5급	사무국장	법원장
				6급 이하	총무과장	사무국장
		사무국을 둔 지원 소속		5급	지원 사무국장	지원장
				6급 이하	지원 총무과장	지원 사무국장
		사무국을 둔 지원 소속	사무과장이 4급인 경우	5급 이하	지원 사무과장	지원장
			사무과장이 5급인 경우	5급	지원장	법원장
		사무국을 둔 지원 소속	사무과장이 5급인 경우	6급 이하	지원 사무과장	지원장
			5급(6급 이하 소장 포함) 6급 이하 (소장 제외)	사무국장	법원장	
		사무국을 둔 지원 소속	5급(6급 이하 소장 포함)	지원 사무국장	지원장	
			6급 이하 (소장 제외)	소장	지원 사무국장	

개정안

II2가4) 평정자 및 확인자(규칙 별표2의2)

기관별		구분	평정대상자	평정자	확인자	
법원행정처			5급	소속실·국장	차장	
			6급 이하	소속과장	소속실·국장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5급	사무국장	원장(관장)	
			6급 이하	소속과장	사무국장	
고등법원, 특허법원			5급	사무국장	법원장	
			6급 이하	소속과장	사무국장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본원		5급	소속국장	법원장	
			6급 이하	소속과장	소속국장	
			5급	지원 사무국장	지원장	
	지원	사무국을 둔 지원 소속		6급 이하	소속과장	지원 사무국장
				5급 이하	지원 사무과장	지원장
		사무국을 둔 지원 소속	사무과장이 4급인 경우	5급 이하	지원 사무과장	지원장
			사무과장이 5급인 경우	5급	지원장	법원장
	시· 군 법원	본원 소속		5급	사무국장	법원장
				6급 이하	총무과장	사무국장
		사무국을 둔 지원 소속		5급	지원 사무국장	지원장
				6급 이하	지원 총무과장	지원 사무국장
		사무국을 둔 지원 소속	사무과장이 4급인 경우	5급 이하	지원 사무과장	지원장
			사무과장이 5급인 경우	5급	지원장	법원장
		사무국을 둔 지원 소속	사무과장이 5급인 경우	6급 이하	지원 사무과장	지원장
			5급(6급 이하 소장 포함) 6급 이하 (소장 제외)	사무국장	법원장	
		사무국을 둔 지원 소속	5급(6급 이하 소장 포함)	지원 사무국장	지원장	
			6급 이하 (소장 제외)	소장	지원 사무국장	

현행

[별표 2] 평정자와 확인자

기관별		구분		평정대상자	평정자	확인자
법원행정처				5급	소속실·국장	차장
				6급 이하	소속과장	소속실·국장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5급	사무국장	원장(관장)
				6급 이하	소속과장	사무국장
고등법원, 특허법원				5급	사무국장	법원장
				6급 이하	소속과장	사무국장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본원			5급	소속국장	법원장
				6급 이하	소속과장	소속국장
	지원	사무국을 둔 지원 소속		5급	지원 사무국장	지원장
				6급 이하	소속과장	지원 사무국장
		사무국을 두지 않은 지원	사무과장이 4급인 경우	5급 이하	지원 사무과장	지원장
			사무과장이 5급인 경우	5급	지원장	법원장
	시·군법원	본원 소속		5급	사무국장	법원장
				6급 이하	총무과장	사무국장
		사무국을 둔 지원 소속		5급	지원 사무국장	지원장
				6급 이하	지원 총무과장	지원 사무국장
	등기소	사무국을 두지 않은 지원 소속		5급 이하	지원 사무과장	지원장
				5급	지원장	법원장
				6급 이하	지원 사무과장	지원장
		본원 소속		5급(6급 이하 소장 포함)	사무국장	법원장
			6급 이하 (소장 제외)	소장	사무국장	
	사무국을 둔 지원 소속		5급(6급 이하 소장 포함)	지원 사무국장	지원장	
		6급 이하 (소장 제외)	소장	지원 사무국장		

[별표3] 임기제공무원의 정기 및 수시평가자의 평가자(Ⅷ. 2. 가. 관련)

※ 관리위원의 1차 평가자는 관리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재판부의 재판장임(다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는 파산수석부의 재판장).

개정안

[별표 2] 평정자와 확인자

기관별		구분		평정대상자	평정자	확인자
법원행정처				5급	소속실·국장	차장
				6급 이하	소속과장	소속실·국장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5급	사무국장	원장(관장)
				6급 이하	소속과장	사무국장
고등법원, 특허법원				5급	사무국장	법원장
				6급 이하	소속과장	사무국장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본원			5급	소속국장	법원장
				6급 이하	소속과장	소속국장
	지원	사무국을 둔 지원 소속		5급	지원 사무국장	지원장
				6급 이하	소속과장	지원 사무국장
		사무국을 두지 않은 지원	사무과장이 4급인 경우	5급 이하	지원 사무과장	지원장
			사무과장이 5급인 경우	5급	지원장	법원장
	시·군법원	본원 소속		5급	사무국장	법원장
				6급 이하	총무과장	사무국장
		사무국을 둔 지원 소속		5급	지원 사무국장	지원장
				6급 이하	지원 총무과장	지원 사무국장
	등기소	사무국을 두지 않은 지원 소속		5급 이하	지원 사무과장	지원장
				5급	지원장	법원장
				6급 이하	지원 사무과장	지원장
		본원 소속		5급(6급 이하 소장 포함)	사무국장	법원장
			6급 이하 (소장 제외)	소장	사무국장	
	사무국을 둔 지원 소속		5급(6급 이하 소장 포함)	지원 사무국장	지원장	
		6급 이하 (소장 제외)	소장	지원 사무국장		

[별표3] 임기제공무원의 정기 및 수시평가자의 평가자(Ⅷ. 2. 가. 관련)

----- <단서 삭제>

◎ 법원장 및 지원장의 재판업무 담당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108호 2017. 1. 27. 결재)

법원장 및 지원장의 재판업무 담당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나.(1) 중 “서울행정법원의”를 “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의”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2. 원칙 및 적용범위</p> <p>가. (생 략)</p> <p>나. 재판업무를 담당하는 법원장 및 지원장의 범위</p> <p>(1) 전국의 각 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u>서울 행정법원의 법원장과 각 지방법원 지원의 지원장은 사법행정업무 이외에도 재판업무를 담당함을 원칙으로 함</u></p> <p>(2) (생 략)</p>	<p>2. 원칙 및 적용범위</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 -----</p> <p>(1) -----<u>서울 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의</u>----- ----- -----</p> <p>(2) (현행과 같음)</p>

◎ 성과상여금 지급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109호 2017. 2. 3. 결재)

성과상여금 지급업무 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I. 2. 가. 1)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적 용 범 위	지 급 대 상
일반직공무원	5급(과장급 직위 제외) 이하
별정직공무원	5급(과장급 직위 제외)상당 이하
전문경력관	전 체
연구직공무원	연구사 및 『법원공무원규칙』 별표5의4 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직공무원 전체

II. 3. 가를 삭제하고, II. 3. 나.의 제목 “5급(상당계급 포함, 이하 같다) 이하 공무원”을 “5급(상당계급 포함, 과장급 직위 제외, 이하 같다)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II. 4. 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지급기준액의 조정

각 개인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의 평균이 표준적인 지급인원비율에 의한 것(첫 번째 성과상여금 54.0%, 두 번째 성과상여금 54.0%) 이하가 되도록 지급기준액(전년도 월봉급액 기준, 이하 같다)을 아래와 같이 조정함

※ 조정지급기준액 = 지급기준액 × 조정지수

* 조정지급기준액 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 첫 번째 성과상여금의 조정지수 = 54.0% / 70% = 0.7714...

○ 두 번째 성과상여금의 조정지수 = 54.0% / 70% = 0.7714...

〈 참고 : 조정지수 산정 방법〉

① 조정된 지급등급과 지급률에 의한 평균지급률 계산

$$\text{평균지급률(\%)} = \sum \text{지급등급별 인원비율(\%)} \times \text{지급률(\%)} / 100$$

□ 첫 번째 성과상여금

$$\text{S등급}(0.2 \times 80) + \text{A등급}(0.6 \times 70) + \text{B등급}(0.2 \times 60) = 70\%$$

□ 두 번째 성과상여금

$$\text{S등급}(0.2 \times 80) + \text{A등급}(0.6 \times 70) + \text{B등급}(0.2 \times 60) = 70\%$$

② 지급기준액 조정지수 계산

□ 첫 번째 성과상여금

$$\text{표준평균지급률}(54.0\%) / \text{평균지급률}(70\%) = 0.7714\dots$$

□ 두 번째 성과상여금

$$\text{표준평균지급률}(54.0\%) / \text{평균지급률}(70\%) = 0.7714\dots$$

Ⅲ. 2. 가. 1)을 삭제하고, Ⅲ. 2. 가. 2)의 제목 “5급 이하 공무원”을 “5급(과장급 직위 제외) 이하 공무원”으로 하며, Ⅲ. 2. 가. 2). 나) 중 “5급상당 이하”을 “5급(과장급 직위 제외)상당 이하”로 하고, Ⅲ. 2. 나. 1) 중 “4급 이하”를 “5급(과장급 직위 제외) 이하”로 하며, Ⅲ. 2. 나. 3). 가)를 삭제하고, Ⅲ. 2. 나. 3). 나)의 제목 “5급 이하 공무원”을 “5급(과장급 직위 제외) 이하 공무원”으로 하며, Ⅲ. 2. 나. 4). 가). 표의 제목 “5급 이하 공무원 평가절차도”를 “5급(과장급 직위 제외) 이하 공무원 평가절차도”로 한다.

Ⅳ. 2. 가. 중 “5급 이하”를 “5급(과장급 직위 제외) 이하”로 한다.

Ⅴ. 1. 가. 2)를 삭제하고, Ⅴ. 1. 가. 3)의 제목 “5급 이하 공무원”을 “5급(과장급 직위 제외)이하 공무원”으로 하며, Ⅴ. 1. 가. 3). 가) 중 “5급 상당”을 “5급(과장급 직위 제외) 상당”으로 하고, Ⅴ. 1. 나. 를 삭제한다.

Ⅶ. 2. 가. 2)를 삭제하고, Ⅶ. 2. 나. 3)의 제목 “5급 이하 공무원”을 “5급(과장급 직위 제외)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Ⅷ. 4. 가. 중 “별지 제4·5호 서식”을 “별지 제5호 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7년 2월 6일부터 시행하되,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I. 총칙

1. ~ 2. (생 략)

가. (생 략)

1) (생 략)

적 용 범 위	지 급 대 상
일반직공무원	복수직 4급(과장급 제외) 및 5급 이하
별정직공무원	복수직 4급 상당(과장급 제외) 및 5급 상당 이하
전문 경력관	(생 략)
연구직공무원	(생 략)

나. ~ 마. (생 략)

II. 지급기준

1.·2. (생 략)

3. 지급단위

가. 4급(상당계급 포함, 이하 같다) 공무원

(1) 일반직 및 별정직(비서관 제외)을 통합하여 계급별로 지급한다. 다만, 별정직 중 비서관은 별도의 지급단위로 세분하여 상당 계급별로 지급한다.

(2) 소속기관 전체를 하나의 지급 단위로 하고 기관 전체의 현원 전부에 대하여 지급등급 및 지급률을 결정한다.

나. 5급(상당계급 포함, 이하 같다) 이하 공무원

1) ~ 3) (생 략)

개 정 안

I. 총칙

1. ~ 2.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적 용 범 위	지 급 대 상
일반직공무원	5급(과장급 직위 제외) 이하
별정직공무원	5급(과장급 직위 제외) 상당 이하
전문 경력관	현행과 같음
연구직공무원	현행과 같음

나. ~ 마. (현행과 같음)

II. 지급기준

1.·2. (현행과 같음)

3. 지급단위

<삭 제>

<삭 제>

<삭 제>

나. 5급(상당계급 포함, 과장급 직위 제외, 이하 같다) 이하 공무원

1) ~ 3) (현행과 같음)

현 행

4. 지급등급과 지급률

가. (생 략)

나. 지급기준액의 조정

각 개인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의 평균이 표준적인 지급인원 비율에 의한 것(첫 번째 성과상여금 52.5%, 두 번째 성과상여금 52.5%) 이하가 되도록 지급기준액(전년도 월봉급액 기준, 이하 같다)을 아래와 같이 조정함.

* 조정지급기준액 = 지급기준액 × 조정지수

* 조정지급기준액 계산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 첫 번째 성과상여금의 조정지수 = 52.5% / ----- = 0.75

○ 두 번째 성과상여금의 조정지수 = 52.5% / ----- = 0.75

< 참고 : 조정지수 산정 방법 >

- ① (생 략)
② 지급기준액 조정지수 계산
□ 첫 번째 성과상여금
표준평균지급률(52.5%) / 평균지급률(70%) = 0.75
□ 두 번째 성과상여금
표준평균지급률(52.5%) / 평균지급률(70%) = 0.75

다. ~ 라.(생 략)

Ⅲ.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1. (생 략)

2. 평가방법

가. 근무성적평정

개 정 안

4. 지급등급과 지급률

가. (현행과 같음)

나. 지급기준액의 조정

각 개인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의 평균이 표준적인 지급인원 비율에 의한 것(첫 번째 성과상여금 54.0%, 두 번째 성과상여금 54.0%) 이하가 되도록 지급기준액(전년도 월봉급액 기준, 이하 같다)을 아래와 같이 조정함.

* 조정지급기준액 = 지급기준액 × 조정지수

* 조정지급기준액 계산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 첫 번째 성과상여금의 조정지수 = 54.0% / ----- = 0.7714...

○ 두 번째 성과상여금의 조정지수 = 54.0% / ----- = 0.7714...

< 참고 : 조정지수 산정 방법 >

- ① (현행과 같음)
② 지급기준액 조정지수 계산
□ 첫 번째 성과상여금
------(54.0%) / ----- = 0.7714...
□ 두 번째 성과상여금
------(54.0%) / ----- = 0.7714...

다. ~ 라.(현행과 같음)

Ⅲ.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1. (현행과 같음)

2. 평가방법

가. 근무성적평정

현행

1) 4급 공무원

가)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제9조의2(4급 이상 근무성적평정)에 따른 목표달성도 평가총점에 따른다.

(1) 목표달성도 평가총점은 법원공무원 평정 업무처리지침(대법원행정예규 제885호, 2011. 1. 31.)에 따른 '개인별목표관리총점표'에 기재되는 총점(평균+가감점)을 그대로 활용한다. 다만, 승진 또는 전보 등으로 수시평가를 한 경우에는 각 평가의 총점을 합한 점수를 평가횟수로 나눈 점수로 한다.

2) 5급 이하 공무원

가) (생략)

(1) (생략)

나) 5급상당 이하 비서관·비서에 대하여는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관리예규(대법원행정예규 제930호, 2012. 10. 17.) 별지 제6호 서식 '근무성적평가서'의 '3. 근무성적평가'의 총점(100점 만점)을 그대로 활용한다.

다) (생략)

나. 실적가점평가

1) 실적가점 평가대상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실적가점 평가는 4급 이하(비서관·비서제외) 및 공무원에 한하여 실시한다.

2) (생략)

개정안

<삭제>

<삭제>

<삭제>

2) 5급(과장급 직위 제외) 이하 공무원

가)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나) 5급(과장급 직위 제외)상당 이하-----

-----.

다) (현행과 같음)

나. 실적가점평가

1) 실적가점 평가대상

-----5급
(과장급 직위 제외) 이하-----
-----.

2) (현행과 같음)

현 행

3) 실적가점 평가방법

가) 4급 공무원

(1) 1차 평가자는 지급대상기간 중의 실적내용을 실질적으로 평가하고, 2차 평가자는 기관 전체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실적가점평가서』에 따라 각 7.5점의 범위에서 실적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두 번째 성과상여금에 대하여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근무실적평가서」에 따라 평가한다.

나) 5급 이하 공무원

(1) ~ (6) (생략)

4) 실적가점 평가시기

가) (생략)

5급 이하 공무원 평가절차도

근무성적 평정점수 (100점) - 근무성적 평정 중 - • 근무실적(60점) • 직무수행태도(40점)	평정자·확인자 실적가점(각 7점) 가점요소 별 실적내용에 대한 평가(요소별 비중반영) * 실적가점 평가서작성	지급대상인원 전부에 대하여 지급단위별 순위결정(114점) *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 순위명부 작성(확인자가 작성함)
기관장실적가점(6점) * 지급단위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의 평가자료 준비(인사담당부서)	지급단위별 성과상여금 심사 대상인원 명부순위결정(120점 만점) * 성과상여금 심사대상자명부 작성(인사담당부서 작성)	지급대상인원 전부에 대하여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 성과상여금 지급순위 및 지급등급결정

개 정 안

3) 실적가점 평가방법

<삭 제>

<삭 제>

나) 5급(과장급 직위 제외) 이하 공무원

(1) ~ (6) (현행과 같음)

4) 실적가점 평가시기

가) (현행과 같음)

5급(과장급 직위 제외) 이하 공무원 평가절차도

근무성적 평정점수 (100점) - 근무성적 평정 중 - • 근무실적(60점) • 직무수행태도(40점)	평정자·확인자 실적가점(각 7점) 가점요소 별 실적내용에 대한 평가(요소별 비중반영) * 실적가점 평가서작성	지급대상인원 전부에 대하여 지급단위별 순위결정(114점) *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 순위명부 작성(확인자가 작성함)
기관장실적가점(6점) * 지급단위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의 평가자료 준비(인사담당부서)	지급단위별 성과상여금 심사 대상인원 명부순위결정(120점 만점) * 성과상여금 심사대상자명부 작성(인사담당부서 작성)	지급대상인원 전부에 대하여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 성과상여금 지급순위 및 지급등급결정

현 행

IV. 성과급심사위원회

1.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설치

가. (생략)

2. 위원회의 권한

가.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지급 단위별 성과
상여금 지급대상 인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순위 및 지급등급 결정

나. (생략)

V. 지급등급의 결정

1. 순위명부의 작성

가. 작성방법

2) 4급 공무원

가) 첫 번째 성과상여금의 경우에는 계급별로
개인별 목표달성도 평가 총점과 1차·2차
평가자가 부여한 실적가점의 합계점수 순
에 따라 별도의 조정절차 없이 별지 제4
호서식에 따라 「성과상여금 지급 순위명
부」를 작성하며, 두 번째 성과상여금의
경우에는 1차·2차 평가자가 부여한 근무
실적 평가점수만에 따라 「성과상여금 지
급순위명부」를 작성한다.

3) 5급 이하 공무원

가) (생략)

나. 동점자 처리기준

1) 4급 공무원의 경우에 있어서 동점자가 발생
할 경우에는 보직이 있는 사람, 임용일자
순, 호봉순, 연령순으로 동점자간 순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등급이 동일하
여 동점자간 순위를 정할 필요가 없을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 정 안

IV. 성과급심사위원회

1.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설치

가. (현행과 같음)

2. 위원회의 권한

가. 5급(과장급 직위 제외) 이하-----

나. (현행과 같음)

V. 지급등급의 결정

1. 순위명부의 작성

가. 작성방법

<삭제>

<삭제>

3) 5급(과장급 직위 제외) 이하 공무원

가)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현행

VII 2 가

2) 5급 공무원

가) 5급 공무원이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복수직 4급 공무원(과장급 제외)으로 승진하여 2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4급 공무원에 포함하여 목표달성도 평가총점과 기관장 실적가점을 합산한 점수만으로 첫 번째 성과상여금을 결정하고, 두 번째 성과상여금은 근무실적 평가점수만으로 결정한다.

나) 5급 공무원이 해당 연도 6월 30일 기준으로 복수직 4급 공무원(과장급 제외)으로 승진하여 2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4급 공무원에 포함하여 근무실적 평가점수만으로 두 번째 성과상여금을 결정한다.

나. (생략)

1)·2) (생략)

3) 5급 이하 공무원

가)·나) (생략)

VIII 4.

가. 소속기관장은 별지 제4·5호 서식의 「성과상여금 지급 순위명부」를 작성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별지 제6·7호 서식에 따라 「지급단위별 성과상여금 등급 결정내역」 및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을 3월 31일 및 9월 30일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생략)

5. (생략)

개정안

VII 2 가

<삭제>

<삭제>

<삭제>

나.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5급(과장급 직위 제외) 이하 공무원

가)·나) (현행과 같음)

VIII 4.

가. -----별지 제5호 서식-----

-----.

나.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 감사업무 관련사항 신속보고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110호 2017. 2. 1. 결재)

감사업무 관련사항 신속보고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5조제2항 중 “행정법원”을 각각 “행정법원, 회생법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각급기관"이라 함은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및 그 지원을 말한다.
- ②·③ (생략)

제5조(보고방법)

- ① (생략)
- ② 최초보고는 보고책임자가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등을 인지하는 즉시 소속기관 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신속하게 시스템 또는 유선으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지원의 보고책임자는 관할 지방법원의 보고책임자에게,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의 보고책임자는 관할 고등법원의 보고책임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④ (생략)

개정안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

-----행정법원, 회생법원-----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5조(보고방법)

- ① (현행과 같음)
- ② -----

-----행정법원, 회생법원-----

-----.
- ③·④ (현행과 같음)

◎ 집행절차에서의 보관업자 등록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111호 2017. 2. 2. 결재)

집행절차에서의 보관업자 등록 등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작성·비치하여야 한다.”를 “작성·비치하고 제1항에 의하여 등록된 보관업자를 「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3항의 보관업자 선임내역 장부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달리 선임할 수 있다.”를 “제4항의 보관업자 선임내역 장부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정보처리시스템」의 「보관업자 선정기능」 중 임의선정방식을 이용하여 달리 선임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채권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제2조제3항의 보관업자 명부에 따라 보관업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를 “채권자가 집행관에 대하여 제2조제3항에 의하여 등재된 보관업자의 선임을 요청하는 때에도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한다.

① 집행관은 직접 제2조제3항에 의하여 등재된 보관업자를 「정보처리시스템」의 「보관업자 선정기능」 중 무작위추출방식을 이용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같은 조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집행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관업자를 선임한 때에는 보관업자, 선임일시, 선임구분(예 : 최초 선임, 재선임), 선임방식(예 : 제3조제1항 본문, 제3조제1항 단서, 제3조제2항) 등이 기재된 선임결과 전산출력물을 출력하여, 대표집행관의 확인을 받은 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보관업자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제6조제2항 중 “기재하여야 한다.”를 “기재하여야 하며 「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된 보관업자를 삭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등록하여야 한다.”를 “등록하고, 「정보처리시스템」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조를 제8조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 (집행조서상 보관업자 등 기재) ① 집행관은 집행에 관한 직무의 수행에 관하여 작성할 집행조서에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한 보관업자, 보관일시, 보관장소, 보관물량(예 : ○톤 컨테이너 1개월 ○원 ○동 또는 ○톤 트럭 ○대), 운반료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집행관은 제1항의 집행조서에 채권자의 승낙을 받아 채권자에게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을 보관시킨 경우에도 보관자, 보관일시, 보관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규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집행관은 이 예규 시행일까지 제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된 보관업자를 「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보관업자 선임 내역

일련 번호	사건 번호	선임인		선임일	보관 업자명	보관장소 및 보관창고 수	대표집행관 확인	비고
		집행관	채권자					

※ 보관창고 수는 동원된 컨테이너 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보관창고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후 보관창고와 변경사유 등을 비고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제2조(보관업자의 등록)

- ①·② (생략)
- ③ 집행관은 매년 12. 31.까지 그 다음해에 선임할 보관업자 명부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3조(보관업자의 선임 방식)

- ① 집행관은 제2조제3항의 보관업자 명부에 등록된 순서대로 보관업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물의 성질, 보관시설의 규모, 접근성 등을 참작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보관업자 선임내역 장부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달리 선임할 수 있다.

- ② 집행관이 채권자에게 동산의 보관을 위임하는 경우 채권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채권자로서 하여금 제2조제3항의 보관업자 명부에 따라 보관업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개 정 안

제2조(보관업자의 등록)

-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

--작성·비치하고, 제1항에 의하여 등록된 보관업자를 「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3조(보관업자의 선임 방식)

- ① 집행관은 직접 제2조제3항에 의하여 등재된 보관업자를 「정보처리시스템」의 「보관업자 선정기능」 중 무작위추출방식을 이용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
-----제4항의 보관업자 선임내역 장부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정보처리시스템」의 「보관업자 선정기능」 중 임의선정방식을 이용하여 달리 선임할 수 있다.

- ② -----
-----채권자가 집행관에 대하여 제2조제3항에 의하여 등재된 보관업자의 선임을 요청하는 때에도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③ 집행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관업자를 선임한 때에는 보관업자, 선임일시, 선임구분(예 : 최초 선임, 재선임), 선임방식(예 : 제3조제1항 본문, 제3조제1항 단서, 제3조제2항) 등이 기재된 선임결과 전산출력물을 출력하여, 대표집행관의 확인을 받은 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보관업자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현 행

③·④ (생 략)

제6조(보관업자의 등록취소 및 추가등록)

① (생 략)

② 집행관은 제1항의 경우 보관업자 명부에서 해당 보관업자를 지우고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등록취소에 따라 보관업자의 수가 제2조제2항의 규정보다 부족하게 된 때에는 등록취소 일로부터 20일 내에 제2조제1항에 따라 보관업자를 추가로 등록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생 략)

개 정 안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6조(보관업자의 등록취소 및 추가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

기재하여야 하며 「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된 보관업자를 삭제하여야 한다.

③ -----

---등록하고, 「정보처리시스템」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제7조(집행조서상 보관업자 등 기재)

① 집행관은 집행에 관한 직무의 수행에 관하여 작성할 집행조서에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한 보관업자, 보관일시, 보관장소, 보관물량(예 : ○톤 컨테이너 1개월 ○월 ○동 또는 ○톤 트럭 ○대), 운반료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집행관은 제1항의 집행조서에 채권자의 승낙을 받아 채권자에게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을 보관시킨 경우에도 보관자, 보관일시, 보관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현행 제7조와 같음)

◎ 노무자등을 보조자로 사용하는 집행사건에 있어서의 노무자등의 관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112호 2017. 2. 2. 결재)

노무자등을 보조자로 사용하는 집행사건에 있어서의 노무자등의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집행관법시행규칙”을 “집행관규칙”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중 “노동자”를 “노무자”로 한다.

제3조제5항 중 “기재하여야 한다.”를 “기재하고, 대표집행관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신분표를 노무자등에게 지급 패용케 하여야 한다.”를 “상의(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착용한 상의(조끼) 번호를 별지 제2호 사용노무자등 관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 (집행조서상 노무자 등 기재) 집행관은 집행에 관한 직무의 수행에 관하여 작성할 집행조서에 선정한 노무자 수, 사용한 노무자 수, 노무수당, 그 밖의 부대비용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및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사용노무자등 관리부

사건번호

집행일시 및 장소

대표집행관 확인

일련번호	착용한 상의(조끼) 번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비고

※ 비고란에는 노무자는 “노”, 기술자는 “기”로 기재

※ 착용한 상의(조끼) 번호란은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착용한 상의(조끼) 번호를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상의(조끼) 양식



※ 상의(조끼) 색상 : 노랑 형광

글자색, 문양색 : 흑색

뒷면 ‘집행’ 글자, 법원 문양, 번호 크기 : 가로세로 각 5cm 이상

뒷면 배열순서 : 위에서 아래로 집(법원문양)행, 번호, 소속 순으로 배열하되, 번호는 중앙에 배열하고 번호를 기재

현 행

〈신 설〉

제9조

(생 략)

개 정 안

제9조(집행조서상 노무자 등 기재)

집행관은 집행에 관한 직무의 수행에 관하여 작성할 집행조서에 선정한 노무자 수, 사용한 노무자 수, 노무수당, 그 밖의 부대비용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

(현행 제9조와 같음)

◎ 집행관사무소에 비치할 각종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113호 2017. 2. 2. 결재)

집행관사무소에 비치할 각종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2 제2-3호서식 아래 주 : 에 제2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주 : 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집행에 저항을 받은 때에는 그 취지와 이에 대하여 한 조치(경찰원조사실 포함)
- ⑥ 집행관이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을 보관한 때에는 그 취지와 보관한 동산의 표시 및 집행절차에서의 보관업자 등록 등에 관한 예규 제7조에 의한 보관(업)자, 보관일시, 보관장소, 보관물량(예 : ○톤 컨테이너 1개월 ○원 ○동 또는 ○톤 트럭 ○대), 운반료 등의 내용
- ⑦ 노무자등을 보조자로 사용하는 집행사건에 있어서의 노무자등의 관리지침에 의하여 선정한 노무자 수, 사용한 노무자 수, 노무수당, 그 밖의 부대비용 등의 내용

별지 2 제2-29호서식 아래 주 : 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 조서는 압류기일과는 별도의 기일에 이미 압류가 된 물건에 대하여 보관절차가 이루어진 경우에 작성한다.
2. 보관조건에는 보관물량(예 : ○톤 컨테이너 1개월 ○원 ○동 또는 ○톤 트럭 ○대), 운반료 등의 내용이 있는 경우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별지 2] 2-3 부동산인도집행조서

○○지방법원

부동산인도집행조서
<p>사 건 : 200 본</p> <p>채 권 자 :</p> <p>채 무 자 :</p> <p>집 행 권 원 :</p> <p style="text-align: center;">(이하 생략)</p>

주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조서에 기재한다.

- ① 집행에 착수한 후 정지한 때에는 그 사유
- ② 집행에 저항을 받은 때에는 그 취지와 이에 대하여 한 조치
- ③ 집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던 때에는 그 사유
- ④ 집행을 속행한 때에는 그 사유
- ⑤ 집행관이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을 채무자 등 민사 집행법 제258조 제3항, 제4항에 규정된 사람에게 인도한 때에는 그 취지
- ⑥ 집행관이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을 보관한 때에는 그 취지와 보관한 동산의 표시

<신 설>

개정안

[별지 2] 2-3 부동산인도집행조서

○○지방법원

부동산인도집행조서
<p>사 건 : 200 본</p> <p>채 권 자 :</p> <p>채 무 자 :</p> <p>집 행 권 원 :</p> <p style="text-align: center;">(이하 현행과 같음)</p>

주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조서에 기재한다.

- ① 집행에 착수한 후 정지한 때에는 그 사유
- ② 집행에 저항을 받은 때에는 그 취지와 이에 대하여 한 조치 (경찰원조사실 포함)
- ③ 집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던 때에는 그 사유
- ④ 집행을 속행한 때에는 그 사유
- ⑤ 집행관이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을 채무자 등 민사 집행법 제258조 제3항, 제4항에 규정된 사람에게 인도한 때에는 그 취지
- ⑥ 집행관이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을 보관한 때에는 그 취지와 보관한 동산의 표시 및 집행절차에서의 보관업자 등록 등에 관한 예규 제7조에 의한 보관(업)자, 보관일시, 보관장소, 보관물량(예 : ○톤 컨테이너 1개월 ○원 ○동 또는 ○톤 트럭 ○대), 운반료 등의 내용
- ⑦ 노무자들을 보조자로 사용하는 집행사건에 있어서의 노무자들의 관리지침에 의하여 선정할 노무자 수, 사용한 노무자 수, 노무수당, 그 밖의 부대비용 등의 내용

현 행

[별지 2] 2-29 압류물보관조서

○○지방법원

압류물보관조서

사 긴 : 200 분
 채 권 자 :
 채 무 자 :
 집행 권 원 :

(이하 생 략)

주 : 이 조서는 압류기일과는 별도의 기일에 이미 압류가 된 물건
 에 대하여 보관절차가 이루어진 경우에 작성한다.

개 정 안

[별지 2] 2-29 압류물보관조서

○○지방법원

압류물보관조서

사 긴 : 200 분
 채 권 자 :
 채 무 자 :
 집행 권 원 :

(이하 현행과 같음)

주 : 1. 이 조서는 압류기일과는 별도의 기일에 이미 압류가 된
 물건에 대하여 보관절차가 이루어진 경우에 작성한다.
 2. 보관조건에는 보관물량(예 : ○톤 컨테이너 1개월 ○원
 ○동 또는 ○톤 트럭 ○대), 운반료 등의 내용이 있는 경
 우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 수신자기호 부여예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114호 2017. 2. 7. 결재)

수신자기호 부여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을 “가정법원, 행정법원 및 회생법원”으로 한다.

별표 1 중 무란(수신자기호 및 기관명)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수신자기호표시요령

예 시	내 용
을, 병, 홍길동	각 고등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회생법원·광주고등법원 원외 재판부(제주) 및 지원과 홍길동에게 발송할 경우
을	각 고등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 및 회생법원에 발송할 경우
을(200000) 또는 을(200)	서울고등법원에 발송할 경우
을(-200000) 또는 을(-200)	서울고등법원을 제외한 각 고등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 및 회생법원에 발송할 경우
을(200000)2 또는 을(200)2	서울고등법원에 2부를 발송할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개정) ① 법원 장의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행정법원, 법원행정처”를 “행정법원, 회생법원, 법원행정처”로 한다.

② 대외기관의 자료제출 등 요청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2호 중 “행정법원, 사법연수원”을 각각 “행정법원, 회생법원, 사법연수원”으로 한다.

③ 법원공무원 주 40시간 근무제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가정법원과 행정법원 포함)”을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포함)”으로 한다.

별지

무	기관명	무	기관명	무	기관명
901140	중부등기소	901452	홍천등기소	901759	울진등기소
901241	동인천등기소	901641	대덕등기소	901760	구미등기소
901242	북인천등기소	901642	금산등기소	901841	부산진등기소
901244	김포등기소	901643	부여등기소	901843	남부산등기소
901245	강화등기소	901644	장항등기소	901844	북부산등기소
901247	남동등기소	901645	보령등기소	901847	금정등기소
901248	계양등기소	901646	청양등기소	901848	중부산등기소
901249	서인천등기소	901647	세종등기소	901849	강서등기소
901341	안양등기소	901648	아산등기소	901850	사하등기소
901342	광주등기소	901649	예산등기소	902341	양산등기소
901343	양평등기소	901650	당진등기소	902342	중부등기소
901344	이천등기소	901651	태안등기소	901941	진해등기소
901345	용인등기소	901652	남대전등기소	901943	함안등기소
901346	안성등기소	901541	보은등기소	901945	의령등기소
901348	화성등기소	901542	옥천등기소	901946	남해등기소
901349	광명등기소	901543	진천등기소	901947	하동등기소
901354	송탄등기소	901544	괴산등기소	901948	산청등기소
901355	시흥등기소	901545	음성등기소	901949	거제등기소
901356	분당등기소	901546	단양등기소	901950	고성(固城)등기소
901357	하남등기소	901743	군위등기소	901951	창녕등기소
901358	동수원등기소	901744	청송등기소	901952	함양등기소
901359	장안등기소	901745	영양등기소	901953	합천등기소
901441	화천등기소	901747	영천등기소	901954	사천등기소
901442	양구등기소	901748	경산등기소	901955	김해등기소
901443	인제등기소	901749	청도등기소	902043	담양등기소
901444	고성(高城)등기소	901750	고령등기소	902044	곡성등기소
901445	양양등기소	901751	성주등기소	902045	구례등기소
901446	삼척등기소	901752	칠곡등기소	902046	광양등기소
901447	동해등기소	901754	문경등기소	902047	여수등기소
901448	태백등기소	901755	예천등기소	902049	고흥등기소
901449	정선등기소	901756	영주등기소	902050	보성등기소
901450	평창등기소	901757	봉화등기소	902052	화순등기소
901451	횡성등기소	901758	울릉등기소	902053	강진등기소

무	기관명	무	기관명	무	기관명
902054	영암등기소	902848	의정부등기소		
902055	나주등기소	902849	파주등기소		
902056	함평등기소	902850	고양등기소		
902057	무안등기소				
902058	영광등기소				
902059	장성등기소				
902060	완도등기소				
902061	진도등기소				
902062	여천등기소				
902141	진안등기소				
902142	무주등기소				
902143	장수등기소				
902144	임실등기소				
902145	순창등기소				
902146	고창등기소				
902147	부안등기소				
902148	김제등기소				
902149	익산등기소				
902151	전주등기소				
902241	서귀포등기소				
902641	동대문등기소				
902642	북부등기소				
902643	도봉등기소				
902741	서대문등기소				
902742	은평등기소				
902743	용산등기소				
902841	남양주등기소				
902842	구리등기소				
902843	연천등기소				
902844	포천등기소				
902845	가평등기소				
902846	동두천등기소				
902847	철원등기소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제2조(수신자기호의 구성)

수신자기호는 기본기호와 세분번호로 구성한다.
기본기호는 다음 각호와 같이 갑·을·병·정·무로 구분한다.

1. (생략)
2. 을 -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
3. ~ 5. (생략)

[별표 1]

법원공문서 수신자기호

무	기관명
	(생략)
902241	서귀포등기소
902441	강동등기소
902442	송파등기소
	(생략)

[별표 2]

수신자기호표시요령

예시	내용
을, 병, 홍길동	각 고등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광주고등법원 원외재판부(제주) 및 지원과 홍길동에게 발송할 경우
을	각 고등법원·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에 발송할 경우
	(생략)
을(-200000) 또는 을(-200)	서울고등법원을 제외한 각 고등법원·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에 발송할 경우
	(생략)

개정안

제2조(수신자기호의 구성)

-----.

1. (현행과 같음)
2. -----가정법원, 행정법원 및 회생법원
3. ~ 5. (현행과 같음)

[별표 1]

법원공문서 수신자기호

무	기관명
	(현행과 같음)
902241	서귀포등기소
<삭제>	<삭제>
<삭제>	<삭제>
	(현행과 같음)

[별표 2]

수신자기호표시요령

예시	내용
을, 병, 홍길동	각 고등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회생법원·광주고등법원 원외재판부(제주) 및 지원과 홍길동에게 발송할 경우
을	각 고등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 및 회생법원에 발송할 경우
	(현행과 같음)
을(-200000) 또는 을(-200)	서울고등법원을 제외한 각 고등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 및 회생법원에 발송할 경우
	(현행과 같음)

◎ 법원공무원 휴가업무예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115호 2017. 2. 7. 결재)

법원공무원 휴가업무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가. (1). (다)를 삭제한다.
3. 가. (3). (다)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재직기간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 일수
6개월 미만	3
6개월 이상 1년 미만	4
1년 이상 2년 미만	6
2년 이상 3년 미만	7
3년 이상 4년 미만	8
4년 이상	10

3. 가. (3). (다). 3)을 삭제한다.
3. 가. (4). (가).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소속 공무원이 휴직(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 1월 이상 교육훈련 파견, 해외주재근무 등으로 당해 연도에 근무하지 않은 기간이 있거나, 당해 연도 중 신규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퇴직하는 경우 권장연가일수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해당연도 근무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frac{\text{해당 연도 근무기간(월)}}{12(\text{월})} \times \text{권장연가일수}$$

※ 파견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받는 기관의 권장연가 일수를 적용받음

3. 가. (5). (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공무원은 잔여 연가를 그 해의 말일을 기준으로 최대 3년까지 이월·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3년의 저축 가능기간이 종료된 후 2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저축 연가 일수는 소멸된다.

3. 가. (5). (가). 2)를 다음과 같이 하고, 3. 가. (5). (가). 2). 가)를 삭제한다.

2) 저축한 연가는 법원공무원규칙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10일 이상의 장기휴가로 사용할 수 있고, 분할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 저축한 연가를 분할 사용하거나 10일 이상 장기휴가로 사용할 경우 최초 저축한 연가일수부터 사용

3. 가. (5). (가).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최대 3년의 저축 가능 기간 중에도 언제든지 그때까지 저축한 연가 일수는 사용가능하므로, 최소 2년부터 최대 5년의 주기로 사용 할 수 있다.

※ 저축연가 분할 사용 사례

○ 2015년 2월, 2016년 7일을 이월저축하였는데, 저축한 연가를 반드시 10일 이상의 장기휴가로 사용해야 하나요?

⇒ 저축연가는 분할 사용 가능하므로 반드시 10일 이상의 장기휴가로 사용할 필요는 없음. 해마다 개인의 필요에 따라 저축한 연가를 사용할 수는 있으나, 2015년에 저축한 연가 일수부터 사용할 수 있음.

○ 2018년 가족여행을 가기 위해 2016년 5일, 2017년 5일을 이월저축하려고 합니다. 혹시 계획대로 저축한 연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저축한 연가는 언제 소멸하나요?

⇒ 일단 연가를 이월저축하면 그 연도부터 최대 3년까지 저축 가능하고, 최대 3년의 저축 가능 기간이 종료된 후 2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됨. 따라서 2016년에 저축한 연가는 2020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 그 해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됨. 또한 2017년에 저축한 5일은 2021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 그 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됨.

3. 가. (5). (나)를 삭제 하고, 3. 가. (5). (다)를 3. 가. (5). (나)로 한다.

3. 가. (6). (가).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미 신청·승인한 10일 이상의 장기휴가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다만, 공무원과 부서장이 상호 협의하여 당해연도 내에서 최대 2회까지 사용 시기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3. 나. (3). (가) 중 “제18조”를 “제17조”로 한다.

3. 다. (1). (가)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하고, 3. 다. (1). (아)를 다음과 같이 한다.

(아)「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32조제5호에 따른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부 칙

이 예규는 2017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3. 휴가종류별 실시방법

가. 연가

(1) 연가일수

(가) ~ (나) (생략)

(다) 연가는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1년 단위로 실시하며, 미사용 연가를 다음해로 이월할 수 없다.

(2) (생략)

(3) 연가계획 및 승인

(가) ~ (나) (생략)

(다) 공무원에게 연가 일수가 없는 경우 또는 당해 재직기간의 잔여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재직기간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 일수
3개월 미만	3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
6개월 이상 1년 미만	4
1년 이상 2년 미만	6
2년 이상 3년 미만	7
3년 이상 4년 미만	8
4년 이상	10

개정안

3. 휴가종류별 실시방법

가. 연가

(1) 연가일수

(가) ~ (나) (현행과 같음)

〈삭제〉

(2) (현행과 같음)

(3) 연가계획 및 승인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

-----.

재직기간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 일수
6개월 미만	3
6개월 이상 1년 미만	4
1년 이상 2년 미만	6
2년 이상 3년 미만	7
3년 이상 4년 미만	8
4년 이상	10

현 행

- 1) ~ 2) (생 략)
- 3) 재직기간이 3월 이상 6월 미만인 공무원은 당해 재직기간 중에 연도가 변경되는지 여부에 따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연가 일수가 3일 또는 6일로 다를 수 있고, 재직기간이 6월 이상 1년 미만인 공무원은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연가 일수가 3일 또는 4일로 다를 수 있다.

(라) (생 략)

(4) 연가 사용의 권장

(가) (생 략)

- 1) ~ 2) (생 략)
- 3) 소속 공무원이 보유하고 있는 연가 일수 (법원공무원규칙 제8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가산된 연가 일수를 포함)가 권장연가 일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연가 일수 전부를 권장연가 일수로 본다.

(나) ~ (마) (생 략)

개 정 안

- 1) ~ 2) (현행과 같음)
- 〈삭 제〉

(라) (현행과 같음)

(4) 연가 사용의 권장

(가) (현행과 같음)

- 1) ~ 2) (현행과 같음)
- 3) 소속 공무원이 휴직(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 1월 이상 교육훈련 파견, 해외주재근무 등으로 당해 연도에 근무하지 않은 기간이 있거나, 당해 연도 중 신규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퇴직하는 경우 권장연가일수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해당연도 근무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frac{\text{해당 연도 근무기간(월)}}{12(\text{월})} \times \text{권장연가일수}$$

※ 파견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받는 기관의 권장연가 일수를 적용받음

(나) ~ (마) (현행과 같음)

현 행

(5) 연가의 저축

(가) 공무원은 사용하지 아니하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말일을 기준으로 최대 3년까지 이월·저축하여 법원공무원규칙 제 82조의4제1항에 따른 10일 이상 장기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1) (생 략)

2) 연가의 이월·저축은 매 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최대 연속 3년(당해연도 말일, 다음연도 말일, 그리고 다음다음연도 말일)까지 가능하다.

가) 저축한 연가는 반드시 법원공무원규칙 제 82조의4제1항에 따른 10일 이상의 장기휴가로 사용하여야 하고,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다.

〈신 설〉

개 정 안

(5) 연가의 저축

(가) 공무원은 잔여 연가를 그 해의 말일을 기준으로 최대 3년까지 이월·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3년의 저축 가능기간이 종료된 후 2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저축 연가 일수는 소멸된다.

1) (현행과 같음)

2) 저축한 연가는 법원공무원규칙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10일 이상의 장기휴가로 사용할 수 있고, 분할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 저축한 연가를 분할 사용하거나 10일 이상 장기휴가로 사용할 경우 최초 저축한 연가 일수부터 사용

〈삭 제〉

3) 최대 3년의 저축 가능 기간 중에도 언제든지 그때까지 저축한 연가 일수는 사용가능하므로, 최소 2년부터 최대 5년의 주기로 사용할 수 있다.

※ 저축연가 분할 사용 사례

○ 2015년 2일, 2016년 7일을 이월저축하였는데, 저축한 연가를 반드시 10일 이상의 장기휴가로 사용해야 하나요?
⇒ 저축연가는 분할 사용 가능하므로 반드시 10일 이상의 장기휴가로 사용할 필요는 없음. 해마다 개인의 필요에 따라 저축한 연가를 사용할 수는 있으나, 2015년에 저축한 연가 일수부터 사용할 수 있음.

현 행

개 정 안

(나) 최대 3년의 저축 가능 기간이 종료된 후 2년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저축연가 일수는 소멸된다.

1) 최대 3년의 저축 가능 기간 중에도 언제든지 그때까지 저축한 연가 일수를 10일 이상의 장기휴가로 사용 가능하므로, 최소 2년부터 최대 5년의 주기로 사용할 수 있다.

※ 10일 이상의 장기휴가를 사용한 연도에도 그 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새롭게 연가의 이월 저축을 할 수 있다.

○ 2018년 가족여행을 가기 위해 2016년 5일, 2017년 5일을 이월저축하려고 합니다. 혹시 계획대로 저축한 연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저축한 연가는 언제 소멸하나요?
 ⇒ 일단 연가를 이월저축하면 그 연도부터 최대 3년까지 저축 가능하고, 최대 3년의 저축 가능기간이 종료된 후 2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됨. 따라서 2016년에 저축한 연가는 2020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 그 해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됨. 또한 2017년에 저축한 5일은 2021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 그 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됨.

〈삭 제〉

※ 연가저축 사례

〈 5년 주기로 사용한 사례 〉

○ '16년부터 '18년까지 총 15일의 연가를 저축하고, '20년에 저축연가 15일과 당해연도 연가 5일을 합하여 장기휴가 20일을 사용함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당 해	보 유	21일	21일	21일	21일	21일
	사 용	12일	12일	13일	13일	18일 (13일+장기5일)
	미 저축	4일	5일	6일	×	×
	사 보 용	5일	4일	2일	8일	3일
저 축	보 유	4일	9일	15일	15일	×
	사 용	×	0일	0일	0일	장기15일

※ 권장연가 일수를 12일로 정한 기관을 가정함

현행

< 2년 주기로 사용한 사례 >

- '16년에 7일의 연가를 저축하고, '17년에 저축연가 7일과 당해연도 연가 8일을 합하여 장기휴가 15일을 사용함

※ 권장연가 일수를 12일로 정한 기관을 가정함

구 분		'16년	'17년	
당 해	보 유	21일	21일	
	사 용	12일	20일 (12일+장기8일)	
	미사용	저축	7일	×
		보상	2일	1일
저 축	보 유	7일	×	
	사 용	×	장기7일	

2) 최대 3년의 저축 가능 기간이 종료된 후 2년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저축한 모든 연가 일수가 소멸된다.

※ 저축연가 소멸 관련 사례

- 1년 또는 2년 저축 후 더 이상 저축하지 않은 경우에 저축 연가는 언제 소멸되는지?
⇒ 일단 연가를 이월·저축하면 그 연도부터 최대 3년의 저축 가능 기간이 시작된 것이므로,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2년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저축한 연가 일수는 모두 소멸됨
- 저축연가 일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 연가 일수만을 활용하여 10일 이상의 장기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저축 연가 일수가 모두 소멸되는 것인지?
⇒ 저축연가는 별도의 저축계좌에 관리하는 것이므로, 최대 5년 주기(3년+2년) 내에 있는 저축연가 일수라면 소멸되지 않음

(다) (생략)

개정안

(나) [중전의 3. 가. (5). (다)와 같음]

현 행

(6)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

(가) (생 략)

1) 이미 신청·승인한 10일 이상의 장기휴가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공무원과 부서장이 상호 협의하여 당해연도 내에서 최대 2회까지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나) (생 략)

(7) ~ (8) (생 략)

나. 병 가

(1) ~ (2) (생 략)

(3) 병가의 운영방법

(가) 7일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연간 누계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의료법 제18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나) (생 략)

(4) (생 략)

다. 공 가

(1) (생 략)

(가)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나) ~ (사) (생 략)

(아)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32조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자) ~ (타) (생 략)

(2) ~ (3) (생 략)

라. (생 략)

개 정 안

(6)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

(가) (현행과 같음)

1) 이미 신청·승인한 10일 이상의 장기휴가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다만, 공무원과 부서장이 상호 협의하여 당해연도 내에서 최대 2회까지 사용 시기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나) (현행과 같음)

(7) ~ (8) (현행과 같음)

나. 병 가

(1) ~ (2) (현행과 같음)

(3) 병가의 운영방법

(가) -----
-----제17조-----
-----.

1) ~ 3)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다. 공 가

(1) (현행과 같음)

(가) -----병역판정검사

(나) ~ (사) (현행과 같음)

(아)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제5호에 따른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자) ~ (타) (현행과 같음)

(2) ~ (3)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 신법령 목록 (2017. 1. 16. ~ 1. 31.)

		공포일	관보호수	관보면수
【법률】				
법률제14525호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	2017. 1. 17	18930	5
법률제14526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9
법률제14527호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	"	"	11
법률제14528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	12
법률제14529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4
법률제14530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5
법률제14531호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	16
법률제1453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6
법률제14533호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	"	40
법률제14534호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	"	48
법률제14535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	"	50
법률제14536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	53
법률제14537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54
법률제14538호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	"	55
법률제14539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	"	"	61
법률제14540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	62
법률제14541호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	"	64
법률제1454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	66
법률제14543호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	"	"	69
법률제14544호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71
법률제14545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	"	89
법률제1454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	"	116
법률제14547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	"	118
법률제14548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	"	119
법률제14549호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	"	"	120

법률제14550호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2017. 1. 17	18930	121
법률제14551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	"	123
법률제14552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	"	126
법률제14553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	"	127

【조약】

조약제2340호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협정	2017. 1. 20	18933	4
----------	--	-------------	-------	---

【대통령령】

대통령령제27788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7. 1. 17	18930	136
대통령령제27789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37
대통령령제27790호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38
대통령령제27791호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39
대통령령제2779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41
대통령령제27793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153
대통령령제27794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	170
대통령령제27795호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73
대통령령제27796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176
대통령령제27797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7. 1. 20	18933	9
대통령령제27798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1
대통령령제27799호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3
대통령령제27800호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7. 1. 24	18935	4
대통령령제27801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5
대통령령제27802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8
대통령령제27803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2
대통령령제27804호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5
대통령령제27805호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6
대통령령제27806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2017. 1. 26	18937	5
대통령령제27807호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6
대통령령제27808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8

대통령령제27809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7. 1. 26	18937	30
대통령령제27810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6
대통령령제27811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5
대통령령제27812호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7. 1. 31	18938	4
대통령령제27813호	군장학생 규정 일부개정령	"	"	6
대통령령제27814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8
대통령령제27815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0
대통령령제27816호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0
대통령령제27817호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16
대통령령제27818호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	"	"	28
대통령령제27819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	"	"	29
대통령령제27820호	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	"	"	30
대통령령제27821호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	"	"	31
대통령령제27822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	"	32
대통령령제27823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	"	"	34
대통령령제27824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7
대통령령제27825호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령	"	"	38
대통령령제27826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9
대통령령제27827호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2

【총리령】

총리령제1358호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 17	18930	179
총리령제1359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 26	18937	48
총리령제1360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50
총리령제1361호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 31	18938	42

【부령】

국토교통부령제388호	건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 17	18930	181
-------------	-----------------	-------------	-------	-----

국토교통부령제386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중정령	2017. 1. 17	18930	181
해양수산부령제221호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 18	18931	4
교육부령제116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40
환경부령제688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 19	18932	4
농림축산식품부령제239호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2
국토교통부령제390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4
교육부령제117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 20	18933	15
문화체육관광부령제283호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일부개정령	"	"	39
국토교통부령제389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40
국토교통부령제391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47
국토교통부령제392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80
국토교통부령제396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91
국토교통부령제397호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103
국토교통부령제398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105
국토교통부령제399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139
산업통상자원부령제236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139
국토교통부령제400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56
농림축산식품부령제240호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 24	18935	16
농림축산식품부령제243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7
보건복지부령제47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22
농림축산식품부령제242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 25	18936	3
농림축산식품부령제244호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6
산업통상자원부령제238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2017. 1. 26 (그2)	18937	2
산업통상자원부령제239호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70
산업통상자원부령제237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 26	18937	50
환경부령제689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72
환경부령제690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02
국방부령제916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 31	18938	55

보건복지부령제475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2017. 1. 31	18938	58
국토교통부령제401호	물류창고업 등록 및 우수업체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58
해양수산부령제222호	물류창고업 등록 및 우수업체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58
국토교통부령제402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59

인 사

인사발령 법 제3호

2017. 1. 18.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 사 명 령
1. 휴직 및 휴직기간 연장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사법연구)	장성진(張性珍)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 2. 16.부터 2017. 6. 23.까지 휴직을 명함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사법연구)	홍성욱(洪性郁)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 2. 16.부터 2018. 2. 25.까지 휴직을 명함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김지영(金志映)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 2. 16.부터 2018. 2. 15.까지 휴직을 명함
	인천지방법원 판사	이수진(李秀眞)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 2. 16.부터 2017. 9. 30.까지 휴직을 명함
	수원지방법원 판사	이현정(李炫姪)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 2. 13.부터 2017. 8. 11.까지 휴직을 명함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판사	조수연(趙秀妍)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 2. 1.부터 2017. 7. 27.까지 휴직을 명함
	대구가정법원 판사 (사법연구)	송민화(宋民和)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 2. 16.부터 2017. 8. 14.까지 휴직을 명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남수진(南秀珍)	2017. 2. 18.부터 2018. 2. 17.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김수연(金秀娟)	2017. 2. 18.부터 2018. 2. 23.까지 휴직 기간을 연장함
	대전지방법원 판사	안지연(安芝演)	2017. 2. 6.부터 2017. 2. 17.까지 휴직기 간을 연장함

2. 복 직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강경숙(姜敬淑)	복직을 명함. 11호봉을 급함.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	----------	---

(2017. 2. 18.자)

나. 고등법원 판사

광주고등법원 판사	강애란(姜愛蘭)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광주고등법원 판사에 포함
-----------	----------	--------------------------------------

(2017. 2. 18.자)

다. 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판사	이혜선(李惠善)	복직을 명함. 3호봉을 급함. 대전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	----------	--------------------------------------

(2017. 2. 1.자)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유성혜(柳誠惠)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의정부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17. 2. 10.자)
	인천지방법원 판사	조아람(曹아람)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인천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17. 2. 14.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명선(李明宣)	복직을 명함. 6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17. 2. 17.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민아(金珉我)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	우인선(禹仁善)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	정다주(鄭多周)	복직을 명함. 10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	정희철(鄭熙哲)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서울가정법원 판사	김태환(金泰桓)	복직을 명함. 10호봉을 급함. 서울가정법원 판사에 포함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서울가정법원 판사	정현경(鄭眩京)	복직을 명함. 9호봉을 급함. 서울가정법원 판사에 포함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강희경(姜希旻)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조은경(趙恩卿)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의정부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인천지방법원 판사	심재완(沈在完)	복직을 명함. 10호봉을 급함. 인천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	이예림(李璉林)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인천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사	박하영(朴河盈)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사에 포함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정지원(鄭至媛)	복직을 명함. 3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에 포함
	대전지방법원 판사	안지연(安芝演)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대전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대구지방법원 판사	양민주(梁旻宙)	복직을 명함. 3호봉을 급함. 대구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대구가정법원 판사	김정운(金淨雲)	복직을 명함. 6호봉을 급함. 대구가정법원 판사에 포함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부산지방법원 판사	우경아(禹炅我)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부산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	박혜영(朴惠英)	복직을 명함. 4호봉을 급함.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에 포함
	전주지방법원 판사	박미영(朴美英)	복직을 명함. 4호봉을 급함. 전주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17. 2. 18.자) 끝.

인사발령 법 제4호

2017. 1. 19.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1. 사법연구(연장)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구)	김형진(金亨進)	2017. 2. 16.부터 2017. 6. 15.까지 사법연구 기간을 연장함
나. 지방법원 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사법연구)	김선아(金仙雅)	2017. 2. 16.부터 2017. 6. 15.까지 사법연구 기간을 연장함. 끝.

인사발령 법 제5호

2017. 1. 19.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1. 퇴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윤진영(尹珍榮)	법원조직법 제4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정년퇴직)
(2017. 1. 25.자) 끝.			

인사발령 법 제6호

2017. 1. 19.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1. 퇴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사	이재홍(李在洪)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7. 2. 1.자) 끝.			

인사발령 법 제7호

2017. 1. 23.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1. 파 견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이장형(李長炯)	2017. 2. 6.부터 2017. 8. 5.까지 통일부 파견근무를 명함. 끝.

인사발령 법 제9호

2017. 1. 25.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1. 임명			
가. 지방법원 판사			
		이백규(李伯圭)	판사에 임함. 10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주한길(朱한길)	판사에 임함. 10호봉을 급함.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17. 2. 1.자)

2. 교육명령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백규(李伯圭)

2017. 2. 1.부터 2017. 2. 15.까지 신임전담법관 연수교육 피교육을 명함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주한길(朱한길)

2017. 2. 1.부터 2017. 2. 15.까지 신임전담법관 연수교육 피교육을 명함. 끝.

인사발령 법 제11호

2017. 1. 31.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1. 퇴직			
가. 고등법원장			
	대구고등법원장	우성만(禹成萬)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부산고등법원장	윤인태(尹寅台)	"
			(2017. 2. 9.자) 끝.

인사발령 법 제13호

2017. 1. 31.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1. 전 보			
가. 고등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최재형(崔在亨)	사법연수원장에 포함
	”	최완주(崔完柱)	서울고등법원장에 포함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사공영진(司空永振)	대구고등법원장에 포함.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겸임을 면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황한식(黃漢式)	부산고등법원장에 포함
나. 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성백현(成百玟)	서울가정법원장에 포함
	대구지방법원장	황병하(黃炳夏)	서울행정법원장에 포함
	제주지방법원장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제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승영(李承寧)	서울동부지방법원장에 포함.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제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겸임을 면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균용(李均龍)	서울남부지방법원장에 포함
	”	노태악(盧泰嶽)	서울북부지방법원장에 포함
	”	정종관(鄭鍾鎬)	의정부지방법원장에 포함
	”	김인욱(金仁旭)	인천지방법원장에 포함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찬돈(金燦敦)	대구지방법원장에 포함.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겸임을 면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광만(李光萬)	부산지방법원장에 포함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박효관(朴孝寬)	창원지방법원장에 포함.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에 겸임함
	”	최인석(崔寅奭)	제주지방법원장에 포함.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제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에 겸임함

(2017. 2. 9.자)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경춘(李炅春)	서울회생법원장에 포함

(2017. 3. 1.자)

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장	여상훈(呂相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2017. 2. 9.부터 2017. 8. 8.까지 사법연 구를 명함
서울행정법원장	김문석(金紋奭)	"
서울동부지방법원장	민중기(閔中基)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서울남부지방법원장	윤성근(尹誠根)	"
서울북부지방법원장	문용선(文容宣)	"
의정부지방법원장	조영철(趙英哲)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2017. 2. 9.부터 2017. 8. 8.까지 사법연 구를 명함
인천지방법원장	김동오(金東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부산지방법원장	강민구(姜玫求)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법원도서관장에 겸임함. 단, 겸임청 근무를 명함
창원지방법원장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창 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강원(李康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창원지방법원 소 재지 근무) 겸임을 면함. 2017. 2. 9.부터 2017. 8. 8.까지 사법연 구를 명함

라. 원로법관

사법연수원장	조용구(趙鏞龜)	원로법관을 지명함.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서울고등법원장	심상철(沈相哲)	원로법관을 지명함. 수원지방법원 성남 지원 부장판사에 포함. 수원지방법원 성 남지원 광주지법원 판사를 지명함

(2017. 2. 9.자) 끝.

인사발령 법 제14호

2017. 1. 31.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1. 전 보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김현석(金賢錫)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포함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마용주(馬鏞周)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에 포함.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겸임을 면함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유상재(兪相在)	사법연수원 수석교수에 포함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유해용(柳海鏞)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강승준(康承竣)	"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이범균(李飢均)	"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김종호(金鍾浩)	"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박영재(朴英在)	"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영진(李榮眞)	"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노정희(盧貞姬)	"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함상훈(咸尙勳)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홍동기(洪東基)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수석부장판사	김용대(金容大)	"
	인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김대웅(金大雄)	"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배준현(裴峻鉉)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전지원(田智媛)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대전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차문호(車文鎬)	"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진성철(秦成哲)	대구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에 포함
	대구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정용달(鄭容達)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겸임함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부산고등법원 판사 (법관인사규칙 제10조)	박준용(朴濬瑢)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대구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임상기(林相奇)	"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관인사규칙 제10조)	강경구(姜京求)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에 포함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심담(沈淡)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	윤강열(尹綱悅)	"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엄상필(嚴相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에 포함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호제훈(扈帝薰)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장	조용현(趙鏞賢)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장	김연우(金淵佑)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에 포함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최인규(崔仁圭)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남성민(南成民)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에 포함
	"	이재권(李在權)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제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에 포함.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에 겸임함
	"	황진구(黃進九)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에 포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김정만(金正晩)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수석부장판사에 포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김형두(金炯斗)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2수석부장판사에 포함.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겸임을 면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정준영(鄭峻永)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에 포함
	"	이창형(李昌炯)	인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에 포함
	"	한창훈(韓昌勳)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에 포함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창영(崔昌永)	대전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에 포함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강동명(姜東明)	대구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에 포함
나. 원로법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강영호(姜永虎)	원로법관을 지명함.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	성기문(成箕汶)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조병현(趙炳顯)	원로법관을 지명함.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에 포함.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 판사를 지명함.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겸임을 면함

(2017. 2. 9.자)

2. 휴직기간 연장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정창호(鄭彰鎬)	2017. 3. 11.부터 2018. 3. 10.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	----------	---

3. 겸임 및 겸임해임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강영수(姜永壽)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에 겸임함. 단, 겸임청 근무를 명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김기정(金基正)	법원도서관장 겸임을 면함.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에 겸임함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구남수(具南秀)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에 겸임함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4. 직무대리 및 직무대리 해제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은애(李垠厓)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를 명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허부열(許富烈)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를 해제함
			(2017. 2. 9.자)

5. 사법연구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경춘(李炘春)

2017. 2. 9.부터 2017. 2. 28.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

정형식(鄭亨植)

2017. 2. 9.부터 2017. 8. 8.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끝.

인사발령 법 제15호

2017. 1. 31.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1. 전 보			
가. 지방법원장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박민수(朴敏秀)	대구가정법원장에 보함
2. 퇴 직			
가. 지방법원장			
	대구가정법원장	김상국(金相局)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7. 2. 9.자) 끝.

● 공 고

■ 2016년도 우수공무원 등 포상대상자

‘창안상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서울동부지방법원	기상문	법원행정처장표창

2016. 06. 30 수여
법원행정처장

‘2016년도 상반기 퇴직공무원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법원도서관	김갑수	홍조근정훈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석범	홍조근정훈장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정태	홍조근정훈장
서울중앙지방법원	문미옥	홍조근정훈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성철	홍조근정훈장
의정부지방법원	조성대	홍조근정훈장
인천지방법원	박도철	홍조근정훈장
인천지방법원	한재필	홍조근정훈장
수원지방법원	강현규	홍조근정훈장
춘천지방법원	류시청	홍조근정훈장
대구지방법원	정성호	홍조근정훈장
대구지방법원	김동춘	홍조근정훈장
부산지방법원	정보영	홍조근정훈장
울산지방법원	이용	홍조근정훈장
광주지방법원	허의천	홍조근정훈장
제주지방법원	김규문	홍조근정훈장
법원행정처	이춘혁	녹조근정훈장
서울고등법원	황보영수	녹조근정훈장

2016. 06. 30 수여

대통령

‘2016년도 상반기 퇴직공무원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법원도서관	김갑수	홍조근정훈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석범	홍조근정훈장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정태	홍조근정훈장
서울중앙지방법원	문미옥	홍조근정훈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성철	홍조근정훈장
의정부지방법원	조성대	홍조근정훈장
인천지방법원	박도철	홍조근정훈장
인천지방법원	한재필	홍조근정훈장
수원지방법원	강현규	홍조근정훈장
춘천지방법원	류시청	홍조근정훈장
대구지방법원	정성호	홍조근정훈장
대구지방법원	김동춘	홍조근정훈장
부산지방법원	정보영	홍조근정훈장
울산지방법원	이용	홍조근정훈장
광주지방법원	허의천	홍조근정훈장
제주지방법원	김규문	홍조근정훈장
법원행정처	이춘혁	녹조근정훈장
서울고등법원	황보영수	녹조근정훈장
춘천지방법원	김상수	녹조근정훈장
춘천지방법원	차정윤	녹조근정훈장

2016. 06. 30 수여

대통령

‘2016년도 상반기 퇴직공무원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청주지방법원	유경수	녹조근정훈장
대구지방법원	노신선	녹조근정훈장
광주지방법원	박병남	녹조근정훈장
법원공무원교육원	박미정	옥조근정훈장
서울고등법원	안종우	옥조근정훈장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승렬	옥조근정훈장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인희	옥조근정훈장
서울동부지방법원	최경락	옥조근정훈장
서울남부지방법원	홍성익	옥조근정훈장
수원지방법원	김정숙	옥조근정훈장
춘천지방법원	정기중	옥조근정훈장
춘천지방법원	이선우	옥조근정훈장
청주지방법원	조정모	옥조근정훈장
대구지방법원	조영숙	옥조근정훈장
대구지방법원	도창섭	옥조근정훈장
대구지방법원	최한기	옥조근정훈장
부산지방법원	오세탁	옥조근정훈장
광주지방법원	정정숙	옥조근정훈장
광주지방법원	이동석	옥조근정훈장
광주지방법원	권혁근	옥조근정훈장
광주지방법원	조연홍	옥조근정훈장
광주지방법원	박동규	옥조근정훈장
전주지방법원	문기원	옥조근정훈장

2016. 06. 30 수여

대통령

‘2016년도 상반기 퇴직공무원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서울동부지방법원	류영덕	근정포장
서울북부지방법원	정경환	근정포장
인천지방법원	정동린	근정포장
인천지방법원	장순창	근정포장
수원지방법원	신항섭	근정포장
수원지방법원	박문양	근정포장
대전지방법원	이관길	근정포장
청주지방법원	정용관	근정포장
대구지방법원	서정대	근정포장
부산지방법원	박현호	근정포장
부산지방법원	김수만	근정포장
울산지방법원	홍성억	근정포장
광주지방법원	문유현	근정포장
법원공무원교육원	박영희	대통령표창
법원도서관	이경순	대통령표창
대구고등법원	김태원	대통령표창
서울가정법원	박영미	대통령표창
서울동부지방법원	윤학채	대통령표창
서울북부지방법원	김용식	대통령표창
의정부지방법원	정동찬	대통령표창
인천지방법원	김강건	대통령표창
인천지방법원	당선증	대통령표창
인천지방법원	임용택	대통령표창

2016. 06. 30 수여

대통령

'2016년도 상반기 퇴직공무원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수원지방법원	이재봉	대통령표창
수원지방법원	고광철	대통령표창
춘천지방법원	진순자	대통령표창
대전지방법원	백인규	대통령표창
대전지방법원	유연형	대통령표창
청주지방법원	성낙준	대통령표창
대구지방법원	경순표	대통령표창
대구지방법원	장영찬	대통령표창
울산지방법원	태일수	대통령표창
창원지방법원	정오석	대통령표창
창원지방법원	이운태	대통령표창
광주지방법원	전대배	대통령표창

2016. 06. 30 수여

대통령

'2016년도 상반기 퇴직공무원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사법연수원	유경중	대법원장표창
서울중앙지방법원	윤대룡	대법원장표창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영채	대법원장표창
서울남부지방법원	김용필	대법원장표창
인천지방법원	김성식	대법원장표창
인천지방법원	최인용	대법원장표창
수원지방법원	최재광	대법원장표창
수원지방법원	김정식	대법원장표창
수원지방법원	윤영립	대법원장표창
청주지방법원	장석휘	대법원장표창
대구지방법원	최해대	대법원장표창
부산지방법원	이윤석	대법원장표창
제주지방법원	박래두	대법원장표창

2016. 06. 30 수여

대법원장

‘2016년도 상반기 퇴직공무원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종경	법원행정처장표창
서울북부지방법원	심갑희	법원행정처장표창
수원지방법원	송진영	법원행정처장표창
춘천지방법원	강성룡	법원행정처장표창
대전지방법원	진영철	법원행정처장표창
대구지방법원	김현태	법원행정처장표창
대구지방법원	정성욱	법원행정처장표창
부산지방법원	송재훈	법원행정처장표창
울산지방법원	강승윤	법원행정처장표창
울산지방법원	김행수	법원행정처장표창
울산지방법원	나준연	법원행정처장표창
광주지방법원	김도현	법원행정처장표창
광주지방법원	최상진	법원행정처장표창
광주지방법원	김상민	법원행정처장표창
전주지방법원	김서홍	법원행정처장표창

2016. 06. 30 수여

법원행정처장

‘정의로운 법원공무원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법원행정처	오주희	법원행정처장표창
법원행정처	변재성	법원행정처장표창
법원행정처	송현명	법원행정처장표창
서울중앙지방법원	이동철	법원행정처장표창

2016. 08. 24 수여

법원행정처장

‘2016년도 법원의 날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법원행정처	故배은석	대법원장표창
서울중앙지방법원	민광태	대법원장표창
법원사랑봉사단체	법원사랑 봉사단체	대법원장표창

2016. 08. 24 수여
대법원장

‘위조등기사건 발견 공무원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의정부지방법원	박민구	대법원장표창
수원지방법원	박찬희	대법원장표창
의정부지방법원	최동원	대법원장표창
수원지방법원	최송립	대법원장표창

2016. 08. 24 수여
대법원장

‘위조등기사건 발견 공무원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인천지방법원	윤성완	법원행정처장표창

2016. 08. 24 수여
법원행정처장

‘위변조 발견 법원공무원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인천지방법원	조경석	법원행정처장표창
인천지방법원	김택곤	법원행정처장표창

2016. 08. 24 수여
법원행정처장

'2016년도 하반기 퇴직공무원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대전고등법원	권지혜	홍조근정훈장
수원지방법원	김병석	홍조근정훈장
수원지방법원	이종연	홍조근정훈장
대구지방법원	황복인	홍조근정훈장
광주지방법원	조지훈	홍조근정훈장
광주지방법원	이민수	홍조근정훈장
전주지방법원	양창신	홍조근정훈장
법원행정처	정지성	녹조근정훈장
법원행정처	윤종욱	녹조근정훈장
법원도서관	윤성혜	녹조근정훈장
서울고등법원	최중환	녹조근정훈장
서울동부지방법원	허경희	녹조근정훈장
대전지방법원	송화록	녹조근정훈장
청주지방법원	박연서	녹조근정훈장
부산지방법원	장옥상	녹조근정훈장
광주지방법원	박성희	녹조근정훈장
법원행정처	김봉수	옥조근정훈장
사법연수원	박용중	옥조근정훈장
서울고등법원	박승순	옥조근정훈장
서울고등법원	노병삼	옥조근정훈장
대전고등법원	박종수	옥조근정훈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이부영	옥조근정훈장
서울행정법원	이혜경	옥조근정훈장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연미	옥조근정훈장
서울남부지방법원	이정호	옥조근정훈장
서울북부지방법원	이한홍	옥조근정훈장
의정부지방법원	김시준	옥조근정훈장

2016. 12. 31 수여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2016년도 하반기 퇴직공무원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수원지방법원	허태식	옥조근정훈장
수원지방법원	홍기백	옥조근정훈장
춘천지방법원	조은정	옥조근정훈장
대전지방법원	장동삼	옥조근정훈장
대구지방법원	이경애	옥조근정훈장
부산지방법원	강영숙	옥조근정훈장
법원도서관	유정순	근정포장
대구고등법원	문상면	근정포장
특허법원	김연승	근정포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용빈	근정포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오성복	근정포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원대훈	근정포장
서울서부지방법원	김응도	근정포장
인천지방법원	박석순	근정포장
인천지방법원	박진식	근정포장
춘천지방법원	김길환	근정포장
춘천지방법원	김종삼	근정포장
대전지방법원	민황동	근정포장
대구지방법원	이동춘	근정포장
전주지방법원	허회인	근정포장
사법연수원	강석환	대통령표창
서울행정법원	김경식	대통령표창
서울동부지방법원	이재복	대통령표창
인천지방법원	심재춘	대통령표창
춘천지방법원	김정원	대통령표창

2016. 12. 31 수여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2016년도 하반기 퇴직공무원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대전지방법원	오재영	대통령표창
대전지방법원	도진기	대통령표창
대구지방법원	최병문	대통령표창
광주가정법원	박상곤	대통령표창
창원지방법원	박석순	대통령표창
창원지방법원	이영춘	대통령표창

2016. 12. 31 수여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2016년도 하반기 퇴직공무원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서울고등법원	박명선	대법원장표창
광주고등법원	서판교	대법원장표창
인천지방법원	김도진	대법원장표창
수원지방법원	박종식	대법원장표창
대구지방법원	김철현	대법원장표창
창원지방법원	강현구	대법원장표창

2016. 12. 31 수여
대법원장

'2016년도 하반기 퇴직공무원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서울중앙지방법원	정현영	법원행정처장표창
의정부지방법원	류경식	법원행정처장표창
인천지방법원	송인숙	법원행정처장표창
수원지방법원	김현섭	법원행정처장표창
대전지방법원	박진현	법원행정처장표창
대전지방법원	김영희	법원행정처장표창
대구지방법원	홍성혁	법원행정처장표창
전주지방법원	구기협	법원행정처장표창
전주지방법원	구형권	법원행정처장표창

2016. 12. 31 수여

법원행정처장

‘2016년도 우수공무원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제주지방법원	강성진	홍조근정훈장
의정부지방법원	조성대	녹조근정훈장
광주고등법원	조영동	근정포장
인천가정법원	안호창	근정포장
대구지방법원	김정훈	근정포장
법원행정처	하기용	대통령표창
법원공무원교육원	윤완규	대통령표창
서울고등법원	박미경	대통령표창
특허법원	이승헌	대통령표창
서울중앙지방법원	도진국	대통령표창
인천지방법원	박남렬	대통령표창
수원지방법원	서병선	대통령표창
대구지방법원	박병식	대통령표창
대구지방법원	이근하	대통령표창
부산지방법원	박진덕	대통령표창
부산지방법원	김휘동	대통령표창

2016. 12. 31 수여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2016년도 우수공무원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법원행정처	권구창	대법원장표창
법원행정처	이민주	대법원장표창
사법연수원	함승신	대법원장표창
사법정책연구원	조호성	대법원장표창
법원도서관	권기현	대법원장표창
대구고등법원	임덕규	대법원장표창
부산고등법원	박진호	대법원장표창
서울중앙지방법원	박수철	대법원장표창
서울중앙지방법원	강호성	대법원장표창
서울중앙지방법원	이광재	대법원장표창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준찬	대법원장표창
서울북부지방법원	김민섭	대법원장표창
서울서부지방법원	왕이남	대법원장표창
의정부지방법원	박형욱	대법원장표창
인천지방법원	이성희	대법원장표창
수원지방법원	길병준	대법원장표창
수원지방법원	송찬석	대법원장표창
대전지방법원	박종배	대법원장표창
대전지방법원	김승자	대법원장표창
대구지방법원	시설희	대법원장표창
대구가정법원	심위준	대법원장표창
창원지방법원	오삼택	대법원장표창
광주지방법원	전정기	대법원장표창
전주지방법원	김기호	대법원장표창
전주지방법원	박성권	대법원장표창

2016. 12. 31 수여

대법원장

‘2016년도 우수공무원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법원행정처	김영철	법원행정처장표창
법원행정처	박준우	법원행정처장표창
법원행정처	이은숙	법원행정처장표창
법원행정처	김희준	법원행정처장표창
법원행정처	이건웅	법원행정처장표창
법원행정처	양운우	법원행정처장표창
법원행정처	박준우	법원행정처장표창
사법연수원	김은경	법원행정처장표창
사법정책연구원	박선우	법원행정처장표창
법원도서관	장다혜	법원행정처장표창
서울고등법원	나강채	법원행정처장표창
대전고등법원	옥성진	법원행정처장표창
부산고등법원	이경만	법원행정처장표창
광주고등법원	김범석	법원행정처장표창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승엽	법원행정처장표창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인섭	법원행정처장표창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재경	법원행정처장표창
서울가정법원	조성수	법원행정처장표창
서울행정법원	이용상	법원행정처장표창
서울북부지방법원	김조건	법원행정처장표창
서울서부지방법원	박창순	법원행정처장표창
의정부지방법원	고홍석	법원행정처장표창
인천지방법원	이순우	법원행정처장표창
인천지방법원	손영호	법원행정처장표창
인천가정법원	이동갑	법원행정처장표창

2016. 12. 31 수여

법원행정처장

‘2016년도 우수공무원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수원지방법원	정성엽	법원행정처장표창
수원지방법원	조동현	법원행정처장표창
수원지방법원	김후경	법원행정처장표창
춘천지방법원	안성우	법원행정처장표창
대전지방법원	이승재	법원행정처장표창
대전가정법원	장천식	법원행정처장표창
청주지방법원	강영한	법원행정처장표창
대구지방법원	신이호	법원행정처장표창
대구지방법원	김종오	법원행정처장표창
대구지방법원	정귀분	법원행정처장표창
대구가정법원	오성휘	법원행정처장표창
부산지방법원	이영진	법원행정처장표창
부산가정법원	안혜진	법원행정처장표창
울산지방법원	김경렬	법원행정처장표창
창원지방법원	박종헌	법원행정처장표창
창원지방법원	강두용	법원행정처장표창
광주지방법원	정수미	법원행정처장표창
광주지방법원	전시호	법원행정처장표창
광주가정법원	서혜진	법원행정처장표창
전주지방법원	이성목	법원행정처장표창
전주지방법원	신현정	법원행정처장표창

2016. 12. 31 수여

법원행정처장

‘2016년도 우수공무원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법원행정처	김건명	모범공무원수당
법원행정처	이경화	모범공무원수당
사법정책연구원	서시내	모범공무원수당
법원도서관	백선기	모범공무원수당
서울고등법원	이병국	모범공무원수당
광주고등법원	신성균	모범공무원수당
특허법원	박지연	모범공무원수당
서울중앙지방법원	한정미	모범공무원수당
서울행정법원	조원진	모범공무원수당
서울동부지방법원	최원열	모범공무원수당
서울남부지방법원	양다열	모범공무원수당
서울북부지방법원	최경아	모범공무원수당
서울서부지방법원	문희진	모범공무원수당
의정부지방법원	이혜정	모범공무원수당
의정부지방법원	백래근	모범공무원수당
인천지방법원	백중현	모범공무원수당
인천지방법원	박상현	모범공무원수당
수원지방법원	김지성	모범공무원수당
수원지방법원	장경재	모범공무원수당
춘천지방법원	심영숙	모범공무원수당
대전지방법원	김경은	모범공무원수당
대전지방법원	송주화	모범공무원수당
대구지방법원	장철구	모범공무원수당
대구지방법원	임이택	모범공무원수당
대구가정법원	배정희	모범공무원수당
부산지방법원	석상환	모범공무원수당
부산지방법원	김미진	모범공무원수당
창원지방법원	남성훈	모범공무원수당
광주지방법원	오준철	모범공무원수당
제주지방법원	양이정	모범공무원수당

2016. 12. 31 수여

법원행정처장

‘재판사무 모범처리 우수공무원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대전고등법원	이규형	대법원장표창
서울북부지법	박의섭	대법원장표창

2016. 12. 31 수여
대법원장

‘재판사무 모범처리 우수공무원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서울고등법원	이영선	법원행정처장표창
광주고등법원	박재석	법원행정처장표창
서울중앙지법	최석훈	법원행정처장표창
인천지방법원	박준복	법원행정처장표창
대전지방법원	김덕균	법원행정처장표창
대구가정법원	황가희	법원행정처장표창
부산지방법원	김명신	법원행정처장표창
부산가정법원	유원하	법원행정처장표창
울산지방법원	정경식	법원행정처장표창
부산고등법원	이권철	법원행정처장표창
청주지방법원	이정규	법원행정처장표창
광주지방법원	박재현	법원행정처장표창
전주지방법원	문찬식	법원행정처장표창
제주지방법원	고경수	법원행정처장표창

2016. 12. 31 수여
법원행정처장

‘감사우수직원 우수공무원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서울고등법원	김중환	대법원장표창
대전지방법원	빈중복	대법원장표창

2016. 12. 31 수여
대법원장

‘감사우수직원 우수공무원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부산고등법원	김완기	법원행정처장표창
서울중앙지법	이종희	법원행정처장표창
서울북부지법	최이원	법원행정처장표창
수원지방법원	최재경	법원행정처장표창
광주지방법원	윤은희	법원행정처장표창

2016. 12. 31 수여
법원행정처장

‘안전유공자’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부산고등법원	박성배	법원행정처장표창
광주고등법원	송광점	법원행정처장표창
서울남부지방법원	이두희	법원행정처장표창
울산지방법원	장민수	법원행정처장표창
대법원	장민규	법원행정처장표창
대전고등법원	홍강웅	법원행정처장표창

2016. 12. 31 수여
법원행정처장

● 공지사항

◎ 1월 신착 법률·일반도서 및 법률 학술잡지 등 목록 게재

법원도서관에 1월분 법률도서(616책), 일반도서(16책) 및 법률학술잡지 등(132종)이 입수되어 다음과 같이 비치되었습니다.

• 법률도서

[법률]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게임의 법칙 : 법은 어떻게 세상을 움직이는가 / 곽한영	창비	2016	
내 가게에 꼭 필요한 창업법률 / 엄정웅	재승출판	2015	
법경제학연구 v.13-3 / 한국법경제학회	한국법경제학회	2016	
法和 政策 v.22-3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濟州大學校	2016	
법령해석사례집 2016(상) / 한국 법제처	법제처	2016	
법률 : 또는 입법에 관하여 / Platon, Nomoi	숲	2016	
법무자료 제324집 :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 (베니스위원회) : 2015年 연례보고서 v324 / 한국 법무부	법무부	2016	
법무자료 제325집 :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 (베니스위원회) : 법치주의 체크리스트 v325 / 한국 법무부	법무부	2016	
법은 사랑입니다 : 김동국 변호사 유고집 / 김동국	은빛	2016	
법철학 / 최종고	三英社	2016	
法學論叢 v.23-3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소	朝鮮大學校 法學研究所	2016	
(법학도를 위한) 한자법률용어 / 김종세	마인드맵	2016	
法學研究 v27-2 / 충북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연구소	충북대학교	2016	
사법논집 = 제63집 / 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2016	
서울法學 v24-3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시립대학교	2016	
成均館法學 v28-4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成均館大學校 比較法研究所	2016	
亞細亞女性法學 v.19 / 아세아여성법학연구소	亞細亞女性法學研究所	201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올바름은 힘이다 : 신영무 자서전 / 신영무	나남	2016	
외법논집 v.40-4 / 한국의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한국의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유민 홍진기 법률논문 선집 / 홍진기	경인문화사	2016	
올촌판례연구 / 법무법인(유) 올촌	박영사	2016	
이익충돌에 관한 법적연구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연구 학술대회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인도의 법과 자본주의 발전 / 백좌흠	경상대학교출판부	2016	
衡平과 正義 v.31 / 대구지방법원호사회	대구지방법원호사회	2016	
홍익법학 v.17-4 / 홍익대학교법학연구소	弘益大學校	2016	
António Manuel Hespanha : Entre a História e o Direito / Xavier, Ângela Barreto	Almedina	2015	
Casos Práticos em Psicologia Forense : Enquadramento Legal e Avaliação Pericial / Agulhas, Rute	Edições Sílabo	2016	
Cultura Jurídica Europeia : Síntese de um Milénio / Hespanha, António Manuel	Almedina	2015	
Legal法律东方主义 : 中国、美国与现代法 / Ruskola, Teemu	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16	
公民常用法律文書範本 : 条文检索与应用指引 / 孙林	法律出版社	2016	
公民常用法律手册 / 法律出版社法规中心	法律出版社	2016	
美国建国时期法政文献选编 / 柯岚	清华大学出版社	2016	
法律法規全書 / 國務院法制辦公室	中國法制	2016	
法律体系、法律方法与法治 / 雷磊	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16	
法律思想史概说 / 小野清一郎	河南人民出版社	2016	
法律人类学论丛 = 第4辑 / 吴大华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16	
法治工作方式 / 陈光中	清华大学出版社	2016	
法治工作素养及养成 / 陈光中	清华大学出版社	2016	
法治的底色 / 胡健	北京大学出版社	2016	
不可不知的1388个法律常识 / 徐宪江	中國法制出版社	2016	
北京大學法學百科全書 : 法理學 立法學 法律社會學 / 北京大學法學百科全書委員會	北大	2016	
北大法律評論 v.16-2 / 北大法律評論編委會	北京大學出版社	2016	
小全書 : 新編憲法國家法 1 / 法律出版社法規中心	法律出版社	2016	
小全書 : 新編婚姻家庭法 2 / 法律出版社法規中心	法律出版社	201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小全書：新編社會保障法 3 / 法律出版社法規中心	法律出版社	2016	
小全書：新編勞動法 4 / 法律出版社法規中心	法律出版社	2016	
小全書：新編勞動合同法 5 / 法律出版社法規中心	法律出版社	2016	
小全書：新編合同法 6 / 法律出版社法規中心	法律出版社	2016	
小全書：新編物權法 7 / 法律出版社法規中心	法律出版社	2016	
小全書：新編土地法 9 / 法律出版社法規中心	法律出版社	2016	
小全書：新編公司法 11 / 法律出版社法規中心	法律出版社	2016	
小全書：新編金融法 12 / 法律出版社法規中心	法律出版社	2016	
小全書：新編道路交通安全法 13 / 法律出版社法規中心	法律出版社	2016	
小全書：新編侵權賠償法 14 / 法律出版社法規中心	法律出版社	2016	
小全書：新編征用拆遷法 15 / 法律出版社法規中心	法律出版社	2016	
小全書：新編消費者保護法 16 / 法律出版社法規中心	法律出版社	2016	
小全書：新編民事法 17 / 法律出版社法規中心	法律出版社	2016	
小全書：新編民事訴訟法 18 / 法律出版社法規中心	法律出版社	2016	
小全書：新編刑事法 19 / 法律出版社法規中心	法律出版社	2016	
小全書：新編刑事訴訟法 20 / 法律出版社法規中心	法律出版社	2016	
新編常用法律知識學習讀本 / 七五普法圖書中心	中國法制出版社	2016	
(新編)中華人民共和國法律法規全書 2016 / 法律出版社法規中心	法律出版社	2016	
新編中華人民共和國司法解釋全書 2016年版 / 中國法制出版社	中國法制	2016	
新編中華人民共和國常用法律法規全書：2016年版 / 國務院法制辦公室	中國法制出版社	2016	
(新編)最高人民法院 最高人民檢察院司法解釋全書 2016年版 / 法律出版社法規中心	法律出版社	2016	
實用法醫鑒定程序 / 邢樹立	知識產權出版社	2016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法律匯編：朝漢對譯 / 李寶奇	法律出版社	2016	
(注釋)法典：中華人民共和國民事法典 = 2 / 國務院法制辦公室	中國法制出版社	2016	
(注釋)法典：中華人民共和國婚姻家庭法典 = 3 / 國務院法制辦公室	中國法制出版社	2016	
(注釋)法典：中華人民共和國物權法典 = 4 / 國務院法制辦公室	中國法制出版社	201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注釋)法典：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典 = 5 / 国务院法制办公室	中国法制出版社	2016	
(注釋)法典：中华人民共和国损害赔偿法典 = 6 / 国务院法制办公室	中国法制出版社	2016	
(注釋)法典：中华人民共和国知识产权法典 = 7 / 国务院法制办公室	中国法制出版社	2016	
(注釋)法典：中华人民共和国商法典 = 9 / 国务院法制办公室	中国法制出版社	2016	
(注釋)法典：中华人民共和国企业法典 = 10 / 国务院法制办公室	中国法制出版社	2016	
(注釋)法典：中华人民共和国金融法典 = 12 / 国务院法制办公室	中国法制出版社	2016	
(注釋)法典：中华人民共和国保险法典 = 14 / 国务院法制办公室	中国法制出版社	2016	
(注釋)法典：中华人民共和国投融资法典 = 15 / 国务院法制办公室	中国法制出版社	2016	
(注釋)法典：中华人民共和国行政法典 = 16 / 国务院法制办公室	中国法制出版社	2016	
(注釋)法典：中华人民共和国教育法典 = 18 / 国务院法制办公室	中国法制出版社	2016	
(注釋)法典：中华人民共和国民政法典 = 20 / 国务院法制办公室	中国法制出版社	2016	
(注釋)法典：中华人民共和国环境法典 = 21 / 国务院法制办公室	中国法制出版社	2016	
(注釋)法典：中华人民共和国经济法典 = 22 / 国务院法制办公室	中国法制出版社	2016	
(注釋)法典：中华人民共和国税法典 = 25 / 国务院法制办公室	中国法制出版社	2016	
(注釋)法典：中华人民共和国国土资源法典 = 26 / 国务院法制办公室	中国法制出版社	2016	
(注釋)法典：中华人民共和国建设工程法典 = 27 / 国务院法制办公室	中国法制出版社	2016	
(注釋)法典：中华人民共和国房地产法典 = 28 / 国务院法制办公室	中国法制出版社	2016	
(注釋)法典：中华人民共和国交通法典 = 29 / 国务院法制办公室	中国法制出版社	201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注釋)法典：中华人民共和国商务贸易法典 = 32 / 国务院法制办公室	中国法制出版社	2016	
(注釋)法典：中华人民共和国社会管理法典 = 33 / 国务院法制办公室	中国法制出版社	2016	
(注釋)法典：中华人民共和国劳动人事法典 = 34 / 国务院法制办公室	中国法制出版社	2016	
(注釋)法典：中华人民共和国社会保险法典 = 35 / 国务院法制办公室	中国法制出版社	2016	
(注釋)法典：中华人民共和国诉讼法典 = 38 / 国务院法制办公室	中国法制出版社	2016	
中国法院2016年度案例 1：婚姻家庭与继承纠纷 / 国家法官学院案例开发研究中心	中国法制出版社	2016	
中国法院2016年度案例 2：物权纠纷 / 国家法官学院案例开发研究中心	中国法制出版社	2016	
中国法院2016年度案例 3：土地纠纷(含林地纠纷) / 国家法官学院案例开发研究中心	中国法制出版社	2016	
中国法院2016年度案例 4：房屋买卖合同纠纷 / 国家法官学院案例开发研究中心	中国法制出版社	2016	
中国法院2016年度案例 5：合同纠纷 / 国家法官学院案例开发研究中心	中国法制出版社	2016	
中国法院2016年度案例 6：买卖合同纠纷 / 国家法官学院案例开发研究中心	中国法制出版社	2016	
中国法院2016年度案例 7：借款担保纠纷 / 国家法官学院案例开发研究中心	中国法制出版社	2016	
中国法院2016年度案例 8：民间借贷纠纷 / 国家法官学院案例开发研究中心	中国法制出版社	2016	
中国法院2016年度案例 9：侵权赔偿纠纷 / 国家法官学院案例开发研究中心	中国法制出版社	2016	
中国法院2016年度案例 10：道路交通纠纷 / 国家法官学院案例开发研究中心	中国法制出版社	2016	
中国法院2016年度案例 11：雇员受害赔偿纠纷 / 国家法官学院案例开发研究中心	中国法制出版社	2016	
中国法院2016年度案例 12：人格权纠纷 / 国家法官学院案例开发研究中心	中国法制出版社	2016	
中国法院2016年度案例 13：劳动纠纷 / 国家法官学院案例开发研究中心	中国法制出版社	201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中国法院2016年度案例 14 : 公司纠纷 / 国家法官学院案例开发研究中心	中国法制出版社	2016	
中国法院2016年度案例 15 : 保险纠纷 / 国家法官学院案例开发研究中心	中国法制出版社	2016	
中国法院2016年度案例 16 : 金融纠纷 / 国家法官学院案例开发研究中心	中国法制出版社	2016	
中国法院2016年度案例 17 : 知识产权纠纷 / 国家法官学院案例开发研究中心	中国法制出版社	2016	
中国法院2016年度案例 18 : 行政纠纷 / 国家法官学院案例开发研究中心	中国法制出版社	2016	
中国法院2016年度案例 19 : 刑法总则案例 / 国家法官学院案例开发研究中心	中国法制出版社	2016	
中国法院2016年度案例 20 : 刑法分则案例 / 国家法官学院案例开发研究中心	中国法制出版社	2016	
中國法治發展報告 v.14 / 夏勇 中國社會科學院法學研究所	社會文獻	2016	
中国比较法学 : 比较法治文化 2015年卷 / 高鸿钧	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16	
中国案例法评论 v.2 / 易延友	法律出版社	2016	
中国案例指导 总第3辑 / 颜茂昆	法律出版社	2016	
中非法律评论 v.1 / 北京外國語大學法學院	中国法制出版社	2016	
中非法律评论 v.2 / 北京外國語大學法學院	中国法制出版社	2016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典 / 国务院法制办公室	中国法制出版社	2016	
中华人民共和国公安法典 / 国务院法制办公室	中国法制出版社	2016	
中华人民共和国法律汇编 2015年版 上册 / 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法制工作委員會	人民出版社	2016	
中华人民共和国法律汇编 2015年版 下册 / 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法制工作委員會	人民出版社	2016	
中華人民共和國常用法律法規規章司法解釋大全 : 附最高人民法院指導案例 2016年版 / 國務院法制辦公室	中國法制	2016	
中華人民共和國常用法典 : 2016年版 / 國務院法制辦公室	中国法制出版社	2016	
中华人民共和国常用司法解释 / 国务院法制办公室	中国法制出版社	2016	
中華人民共和國最新司法解釋全集 : 附贈超值光盤含常用法律法規 / 法律出版社法規中心	法律出版社	2016	
中华人民共和国刑法典 / 国务院法制办公室	中国法制出版社	2016	
법고를 LX 2017 / 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2017	

[법제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탕평시대 법치주의 유산 : 조선후기 국법체계 재구축사 / 김백철	경인문화사	2016	
Prisão e Ciência Penitenciária em Portugal / Romão, Miguel Lopes	Almedina	2015	
近代中国的法律与政治 / 中国社会科学院近代史研究所法律史研究群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16	
中国法制史案例集 / 柳正权	武汉大学出版社	2016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GLOBAL IP TREND v.2016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6	
經濟法研究 v.15-3 / 한국경제법학회	한국경제법학회	2016	
공정한 시장거래질서 확립과 지식재산권의 행사 : 2016 전문가 포럼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6	
공직사회의 부당한 청탁방지를 위한 청탁 행위 대응 매뉴얼 / 국민권익위원회	진한엠앤비	2016	
과학기술과 법 v.7-2 /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국가별 연간 지식재산 정책분석 v.4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6	
국유재산관리 업무편람 /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6	
금융법의 이론과 실무 / 은행법학회	피앤씨미디어	2016	
노동법 / 김명수	중앙경제	2016	
노동법의 기초구조 / 니시타니 사토시	박영사	2016	
노동법의 쟁점과 사례 연구 / 박귀천	신론사	2016	
노동보험포럼 v.18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연구센터	근로복지공단 노동보험연구원	2016	
労働組合 및 労働関係調整法 注解 I : 제1조~제29조의5 / 노동법실무연구회	博英社	2015	
労働組合 및 労働関係調整法 注解 II : 제30조~제80조 / 노동법실무연구회	博英社	201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労働組合 및 労働関係調整法 注解 III : 제81조~제87조,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근참법/노위법 / 노동법실무연구회	博英社	2015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한) 법인세법 : 2017年 신고대비 겸 / 김규수	삼일인포마인	2016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해설 / 황승흠	커뮤니케이션북스	2015	
도서관·데이터 공유 관련 법령집 / 질병관리본부 의과학지식관리과	휴먼컬처아리랑	2016	
독일 노동법과 노사관계 / Weiss, Manfred	중앙경제	2016	
독점규제법 / 신동권	박영사	2016	
디자인보호법 주해 / 정상조	박영사	2015	
(로스쿨) 노동법 해설 / 조용만	오래	2016	
문화재보호법총론 [1] / 김창규	동방문화사	2017	
문화재보호법각론 [2] / 김창규	동방문화사	2017	
미국 주식 자본이득 과세제도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2016	
사례로 해결하는 식품사건 : 형사·행정 / 김태민	좋은땅	2016	
사립학교와 헌법 : 자유와 평등의 조화 / 이명웅	신조사	2016	
사회법연구 v.30 / 한국사회법학회	한국사회법학회	2016	
사회복지와 법의 만남 : 사회복지법제의 통합적 접근 / 정진경	공동체	2016	
산업재해 이렇게 해결하라 : 산재의 실제와 해법 / 김종석	법문북스	2015	
상표권 침해소송의 이론과 실무 / 한국지식재산학회	法文社	2016	
상표법 / 원대규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6	
(소규모사업자를 위한)세법 사용설명서 / 이강	좋은땅	2016	
소프트웨어와 리걸 프레임, 10가지 이슈 (커뮤니케이션 이해총서) / 김윤명	커뮤니케이션북스	2016	
심판처리기간 단축의 사회 경제적 효과분석 / 한국 특허청	휴먼컬처아리랑	2016	
영업비밀보호법 실무 / 김병남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6	
유럽에서 저작권과 구글의 투쟁 / 한수경	커뮤니케이션북스	2016	
유럽특허법 / 박동식	세창출판사	2016	
인공지능과 리걸 프레임, 10가지 이슈 / 김윤명	커뮤니케이션북스	2016	
자본시장법 강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해설 / 윤승한	삼일인포마인	201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자본시장법 기본 판례 / 박준	小花	2016	
자본시장법 : 주석서 I : [제1조~제180조] / 한국증권법학회	博英社	2015	
자본시장법 : 주석서 II : [제181조~제449조] / 한국증권법학회	博英社	2015	
자산운용 법규 실무안내 / 금융감독원	진한엠앤비	2016	
장애와 고용 v.26-4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6	
조상 땅 찾기의 모든 것 : 땅의 소재파악부터 실권리자 등기까지 / 최중배	법률출판사	2016	
지명표장(地名標章) 보호법제 : 지리적 표시 포함 / 이규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6	
지식재산연구 v.11-4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6	
지식재산 이슈페이퍼 : 2016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6	
징계권의 법률지식 / 이상국	考試界社	2016	
최신관광법규문 / 정희천	大旺社	2016	
(최신)관세법총론 / 이재홍	청람	2016	
특허요건론 / 한국지식재산학회	法文社	2016	
특허 침해소송의 이론과 실무 / 한국지식재산학회	法文社	2016	
특허협력조약 및 규칙 / 한국 특허청	진한엠앤비	2016	
하도급분쟁의 쟁점 / 길기관	진원사	2016	
(핵심) 실무 법인세법 : 2016 / 이영우	영화조세통람	2016	
환경분쟁구제법 / 백승주	법원사	2016	
환경정책법규 원론 / 박석순	어문학사	2016	
Contrato de Trabalho : Noções Básicas / Amado, João Leal	Coimbra Editora	2015	
Código da Propriedade Industrial - Anotado / Robalo, André	Almedina	2015	
Direito do Processo Laboral : uma síntese e algumas questões / Martins, Alcides	Almedina	2015	
Direito dos Valores Mobiliários 1 : Fontes dogmática geral / Cordeiro, A Barreto Menezes	Almedina	2015	
Direito do Trabalho / Martinez, Pedro Romano	Almedina	2015	
Direito Financeiro Local : Finanças Locais / Rocha, Joaquim Freitas da	Coimbra Editora	2014	
Lições de Impostos sobre o Património e do Selo / Pires, José Maria Fernandes	Almedina	201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Manual de Direito Industrial : Propriedade industrial e Concorrência Desleal / Gonçalves, Luís Manuel Couto	Almedina	2015	
Novo Regime dos Bens em Circulação / Catarino, João Ricardo	Almedina	2015	
O Mútuo Bancário : ensaio sobre a estrutura sinalagmática do contrato de mútuo / Bastos, Miguel Brito	Coimbra Editora	2015	
Responsabilidade Contratual do Empreiteiro pelos Defeitos da Obra / Mariano, João Cura	Almedina	2015	
Tratado de Direito do Trabalho, Parte I : Dogmática Geral / Ramalho, Maria do Rosário Palma	Almedina	2015	
Tratado de Direito do Trabalho, Parte III : Situações Laborais Colectivas, / Ramalho, Maria do Rosário Palma	Almedina	2016	
建设工程索赔与反索赔 / 袁华之	法律出版社	2016	
竞争法律与政策评论 = 2015年 第1卷 / 王先林	上海交通大学出版社	2016	
竞争法的基本范畴研究 / 李彬	知识产权出版社	2016	
經濟法 / 张素伦	武汉大学出版社	2016	
经济法 / 傅宪华	经济科学出版社	2016	
经济法教程 / 庞欢	经济科学出版社	2016	
经济法教程 / 殷菲菲	北京大学出版社	2016	
经济制度变迁与法律规制 / 李晓新	法律出版社	2016	
金融案件司法观点集成 / 孙林琳	法律出版社	2016	
企業常用法律文書範本 / 孫林	法律出版社	2016	
金融纠纷裁判思路与裁判规则 / 王林清	法律出版社	2016	
金融借款合同纠纷诉讼实务指引 / 徐建新	人民法院出版社	2016	
劳动纠纷裁判思路与规范指引 / 王林清	法律出版社	2016	
劳动及社会保障法律适用全书 / 中国法制出版社	中国法制出版社	2016	
劳动法律纠纷处理依据与解读 / 法律出版社法规中心	法律出版社	2016	
劳动法域外效力研究 / 孙国平	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16	
劳动合同法学习读本 / 七五普法图书中心	中国法制出版社	2016	
劳务派遣转型业务外包的法律路径 : 劳动法评弹(续) / 彭小坤	法律出版社	2016	
农事法 / 陈晓军	中国法制出版社	2016	
农村土地抵押法律问题研究 / 胡建	法律出版社	2016	
劳动法案例读本 / 七五普法图书中心	中国法制出版社	201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劳动法学习读本/	中国法制出版社	2016	
劳动合同法法律纠纷处理依据与解读 / 法律出版社法规中心	法律出版社	2016	
劳动合同法速查速用大合集 : 第3版, 增订版 / 法宝网	中国法制出版社	2016	
劳动合同法案例读本 / 七五普法图书中心	中国法制出版社	2016	
网络环境中著作权保护体系的重构 / 孟兆平	北京大学出版社	2016	
网络时代消费者权益保护的法律问题研究 / 许军珂	世界知识出版社	2016	
文物犯罪的理论与实务 / 喻海松	法律出版社	2016	
未成年人、妇女、老人权益保护不可不知400问 / 法律出版社专业出版编委会	法律出版社	2016	
房屋买卖法律纠纷处理依据与解读 / 法律出版社法规中心	法律出版社	2016	
环境纠纷行政解决机制实证研究 / 冯露	北京大学出版社	2016	
环境保护案件实例解析与办案实用法规大全 / 陈勇儒	法律出版社	2016	
环境司法判解研究 / 余俊	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16	
商标、专利、著作权不可不知440问 / 法律出版社专业出版编委会	法律出版社	2016	
商标权的救济基础研究 / 刘维	法律出版社	2016	
商标法基本问题研究 / 姚鹤徽	知识产权出版社	2016	
税务稽查典型案例评析 / 陈筠	法律出版社	2016	
(新編)經濟法教程 / 孟凡麟	經濟科學出版社	2016	
长安金融法学研究 第6卷 / 强力	法律出版社	2016	
财经与建筑法规实务 / 李平	华中科技大学出版社	2016	
财政法理论研究 / 任际	法律出版社	2016	
著作权法故事汇 / 刘勇	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16	
专利权限制研究 / 罗军	知识产权出版社	2016	
专利法原理 / Roger E. Schechter	知识产权出版社	2016	
证券法律评论 : 注册制改革背景下中国证券市场法治建设”专辑 : 2016年卷 / 郭锋	中国法制出版社	2016	
证券法苑 v.16 / 上海证券交易所	法律出版社	2016	
证券法苑 v.17 / 上海证券交易所	法律出版社	2016	
中國競爭法律與政策研究報告 : 2015年 / 中國世界貿易組織研究會與法律專業委員會	法律出版社	2016	
中国网络法律规则的完善思路 : 刑法卷 : [2] / 田刚	中国法制出版社	201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中国网络法律规则的完善思路：民商法卷：[3] / 于志强	中国法制出版社	2016	
中国网络法律规则的完善思路：行政法卷：[4] / 于志强	中国法制出版社	2016	
中国环境法治：2015年卷 總第15期 / 曹明德 魏晓娟	法律出版社	2016	
中国知识产权发展报告 = 2015 / 中国知识产权研究会	中国财政经济出版社	2016	
中国知识产权指导案例评注 第7辑 / 中國 最高人民法院知识产权审判庭	中国法制出版社	2016	
中华人民共和国建筑法律法规全书：含典型案例及文书范本 ：2016年版 / 中国法制出版社	中国法制出版社	2016	
中华人民共和国经济法律法规全书：含司法解释：2016 / 法律出版社法規中心	法律出版社	2016	
中华人民共和国劳动法 中华人民共和国劳动合同法 ：实用问题版 / 法律出版社大众出版编委会	法律出版社	2016	
中華人民共和國勞動和社會保障法規全書： 含相關政策：2016 / 法律出版社法規中心	法律出版社	2016	
中华人民共和国劳动和社会保障法律法规全书 ：含相关政策及典型案例：2016年版 / 中国法制出版社	中国法制出版社	2016	
中華人民共和國稅收基本法規 2016年版 / 中國 國家稅務總局	中國稅務出版社	2016	
中華人民共和國醫藥法律法規全書：含相關政策：2015 / 法律出版社法規中心	法律出版社	2016	
中華人民共和國土地法律法規全書：含相關政策：2016 / 法律出版社法規中心	法律出版社	2016	
知识产权法 / 中国法制出版社	中国法制出版社	2016	
知识产权法 / 谢惠加	华中科技大学出版社	2016	
知识产权损害赔偿评估 / 王景	知识产权出版社	2016	
知识产权审判理念与实务：宁波法院知识产权审判十年成果 集成 / 中國 浙江省宁波市中级人民法院知识产权审判庭	中国法制出版社	2016	
知识产权维权获赠技能案例指引集 / 国家知识产权局保护协调司	知识产权出版社	2016	
最高人民法院矿产资源案件审理思路与裁判方法 / 中國 最高人民法院环境资源审判庭	中国法制出版社	2016	
最高人民法院环境侵权责任纠纷司法解释理解与适用 / 沈德咏	人民法院出版社	2016	
最高人民法院知识产权审判案例指导： 最高人民法院知识产权案件年度报告 第八辑 / 最高人民法院知识产权审判庭	中国法制出版社	2016	
土地法律适用全书 / 中国法制出版社	中国法制出版社	2016	
投融资常见法律问题实用问答 / 梁轶	中国法制出版社	2016	

[국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국제경제법 강의 / 이석용	한남대학교출판부	2016	
국제법 동향과 실무 v.43 / 한국 외교통상부	외교통상부	2016	
국제해사협약 이론과 실무 / 이윤철	다솜출판사	2016	
대일평화조약상 독도의 법적 지위 / 김명기	선인	2016	
대한민국조약집 : 다자조약 v.23 / 한국 외무부	외무부	2015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인 이유 / 성삼제	태학사	2016	
독도 영유권 확립을 위한 연구 : VI /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선인	2015	
독도 영유권 확립을 위한 연구 : VII /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선인	2015	
서울국제법연구 v.23-2 /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원	2016	
(新)국제법입문 / 정인섭	박영사	2016	
(알기 쉬운) 국제 플랜트 계약과 클레임 강의 / 손동환	법률출판사	2016	
외국인·이주민을 위한 주요 소송절차 안내 : 법원행정처 / 한국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6	
중재연구 v.26-4 / 한국중재학회	한국중재학회	2016	
한국의 독도영토주권의 국제적 승인 / 김명기	선인	2015	
(A) Diplomacia Pública no Contexto das Organizações Internacionais : o caso da CPLP / Teles, Felício	Coimbra Editora	2015	
Direito dos Petróleos / Cordeiro, António Menezes	Almedina	2015	
Direito Internacional Privado, Volume II : Direito de conflitos - parte especial / Pinheiro, Luís de Lima	Almedina	2015	
Tratado da Arbitragem : Comentário à Lei 63-2011, de 14 de dezembro / Cordeiro, António Menezes	Almedina	2015	
WTO法与中国论坛年刊 / 林中梁	知识产权出版社	2016	
境外追赃刑事法律问题研究 / 解彬	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16	
国际商事仲裁中的话语与实务 : 问题、挑战与展望 / Bhatia, Vijay K	北京大学出版社	2016	
国际海商法最新案例选编 / 吴士存	中国民主法制出版社	2016	
一带一路的国际法律视野 : 香港2015“一带一路”国际论坛文集 / 王贵国	浙江大学出版社	2016	
中韩恐怖主义犯罪的惩治与防范 : “第十三届中韩刑法学术研讨会”学术文集 / 赵秉志	法律出版社	2016	
海洋争端解决机制与中国政策 / 孙立文	法律出版社	2016	

[헌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개인 정보 / 최승재	커뮤니케이션북스	2016	
공익과 인권 v.16 /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2016	
기본권 제한 심사의 법익 형량 / 이민열	경인문화사	2016	
생의 마지막 단계에서의 존엄성 / 군나 두트게	세창출판사	2016	
選舉研究 v.7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6	
인권법의 이론과 실제 v.13 / 한양대학교 공익소수자인권센터	한양대학교 공익소수자인권센터	2016	
입법과 정책 v.8-2 /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법제연구원	2016	
지금 다시, 헌법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차병직	로고폴리스	2016	
한국인권보고서 v.2016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6	
헌법과 법제실무 / 한국 법제처	휴먼컬처아리랑	2015	
憲法論叢 v.27 / 한국 헌법재판소	憲法裁判所	2016	
헌법재판연구 v.3-2 / 한국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소	2016	
(2014年)中国十大宪法事例评析 / 胡锦涛	法律出版社	2016	
A Constituição Portuguesa Num Contexto Global / Medeiros, Rui	Universidade Católica Editora	2016	
A Tutela Constitucional da Autonomia Privada / Prata, Ana Maria Correia Rodrigues	Almedina	2016	
Constituição da República de Angola : enquadramento histórico e trabalhos preparatórios. Volume I / Feijó, Carlos Maria	Almedina	2015	
Constituição da República de Angola. Volume II / Feijó, Carlos Maria	Almedina	2015	
Curso de Direito Constitucional : Funções do Estado e poder legislativo no ordenamento português. Tome I / Moraes, Carlos Blanco de	Coimbra Editora	2015	
Embrões Excedentários : entre a técnica, a lei e a ética / Silvestre, Margarida	Coimbra Editora	201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Os) Direitos Sociais em Tempos de Crise : Ou revisitar as normas programáticas / Botelho, Catarina Santos	Almedina	2015	
中国共产党党内法规研究 / 李军	天津人民出版社	2016	
中国共产党党章及历次修正案文本汇编 : 1921-2012 / 夏利彪	法律出版社	2016	
中华民国立法史上 / 谢振民	河南人民出版社	2016	
中华民国立法史下 / 谢振民	河南人民出版社	2016	
憲法 / 田容嘉	中国法制出版社	2016	

[행정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경찰학연구 v.48 / 경찰학연구 편집위원회	경찰대학	2016	
나홀로 하는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 송법석	지식공감	2016	
(사례연구) 행정법연습 / 김향기	大明出版社	2016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집 2016 v.2016 / 한국 법제처	법제처	2016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 2016年 v.2016 / 한국 법제처	법제처	2016	
주요국 감사원법 개정 동향 / 홍종현	감사원 감사연구원	2016	
토지수용보상금공탁 절차실무 : 2016年 최신판 / 안재길	법률정보센터	2016	
행정법개론 / 신봉기	三英社	2016	
행정소송사례집 v.37 / 한국 법무부	法務部訟務課	2016	
Ação Executiva para Pagamento de Quantia Certa : de acordo com a Lei no, 41/2013, de 26 de junho e Lei da Organização do Sistema Judiciário / Carvalho, José Henrique Delgado de	Quid Juris	2016	
(Casos Práticos) Direito Administrativo : Textos e Casos Práticos Resolvidos / Moniz, Ana Raquel Gonçalves	Almedina	2015	
História da Administração Pública / Marcos, Rui Manuel de Figueiredo	Almedina	2016	
Novo Código de Procedimento Administrativo : Notas Práticas e Jurisprudência / Batalhão, Carlos José	Porto Editora	2015	
Novo Código do Procedimento Administrativo : Anotado e Comentado / Gonçalves, Fernando	Almedina	201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Noções Fundamentais de Direito Administrativo / Oliveira, Fernanda Paula	Almedina	2016	
O Direito de Regresso na Responsabilidade Administrativa / Serrão, Tiago	Coimbra Editora	2015	
Regime Jurídico dos Instrumentos de Gestão Territorial : Comentado / Oliveira, Fernanda Paula	Almedina	2016	
Teoria Geral do Direito Administrativo : o novo regime do Código do Procedimento Administrativo / Almeida, Mário Aroso de	Almedina	2016	
失当行政行为救济研究 / 林莉红	武汉大学出版社	2016	
外国行政法学 / 姬亚平	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16	
征收拆迁补偿法律适用全书：征收、估价、补偿、执行 / 中国法制出版社	中国法制出版社	2016	
征收拆迁补偿：实用版法规专辑 / 中国法制出版社	中国法制出版社	2016	
中国禁烟法令变迁史 / 于恩德	河南人民出版社	2016	
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一本通 / 法规应用研究中心	中国法制出版社	2016	
行政强制法律适用研究 / 王菲	知识产权出版社	2016	
行政法：实用版法规专辑 / 中国法制出版社	中国法制出版社	2016	
行政复议法行政诉讼法一本通 / 法规应用研究中心	中国法制出版社	2016	
行政诉讼法律手册 / 法律出版社法规中心	法律出版社	2016	

[형법(형사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꼭 알아야 할)김영란법 핵심 가이드 : 이철우 지음 : 2016 / 이철우	소담출판사	2016	
범죄예방정책연구 v.28 / 한국 법무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2016	
보이스피싱,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 경찰청 수사국	미래의창	2016	
부패범죄 심리 매뉴얼 / 부패범죄 심리방식 연구위원회	법원행정처	2016	
(알기 쉽게 풀이한)김영란법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Q&A사례집 및 법제처의 법령자료들을 취합한 / 대한법률실무연구회	법문북스	201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판결이 궁금해요?! 판사들과 함께하는 판례산책 : 형사편 / 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2016	
형법총론 / 도중진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형법판례 150선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박영사	2016	
Combate à Violência de Género : Da Convenção de Istambul à nova Legislação Pena / Cunha, Maria da Conceição Ferreira da Cunha	Universidade Católica Portuguesa	2016	
Comentário do Código Penal : á Luz da Constituição da República e da Convenção Europeia dos Direitos do Homem / Albuquerque, Paulo Pinto de	Universidade Católica Editora	2015	
Código Penal Anotado. Vol II : artº.69º a 130º / Santos, Manuel Simas	Rei Dos Livros	2015	
Códigos Penal e Processo Penal / Rocha, Isabel	Porto Editora	2015	
Do Concurso de Crimes ao «Concurso de Ilícitos» em Direito Penal / Monteiro, Cristina Libano	Almedina	2015	
Ilícitude Penal e Justificação : reflexões a partir do ontologismo de Faria Costa / Moura, Bruno de Oliveira	Coimbra Editora	2015	
O Direito Penal Passo a Passo. Volume I / Garcia, M. Miguez	Almedina	2015	
O Direito Penal Passo a Passo. Volume II / Garcia, M. Miguez	Almedina	2015	
Os Limites de Punibilidade em Sede de Autoria : análise crítica à luz do princípio da legalidade criminal do artigo 16o. do Código Penal, em si mesmo e na sua aplicação pelo tribunais superiores / Varela, João Athayde	Coimbra Editora	2015	
规范性刑法解释与刑事案例 / 牛克乾	人民法院出版社	2016	
論罪刑法定的事实明确 / 文海林	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16	
道路交通事故 : 实用法规专辑 / 中国法制出版社编	中国法制出版社	2016	
道路交通安全法速查速用大全集 / 法宝网	中国法制出版社	2016	
道路交通安全法案例读本 / 七五普法图书中心	中国法制出版社	2016	
道路交通安全法学习读本 / 七五普法图书中心	中国法制出版社	2016	
犯罪干预与预防评估系统回顾研究 / 刘建宏	人民出版社	2016	
法律适用方法 刑法案例分析方法 / 国家法官学院	中国法制出版社	2016	
腐败犯罪境外追赃研究 / 林雪标	福建人民出版社	2016	
司法的责任与担当. 第七辑 / 周继业	法律出版社	201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死刑裁量论 / 吴光侠	法律出版社	2016	
案例刑法学 各论 / 于志刚	中国法制出版社	2016	
中国禁毒法治论 / 褚宸舸	中国民主法制出版社	2016	
中国少年司法 v.27 / 中国 最高人民法院少年法庭指导小组	人民法院出版社	2016	
中国儿童人权法治保障探究 / 吴鹏飞	中国民主法制出版社	2016	
中华人民共和国公安法律法规全书：含文书范本：2016年版 / 中国法制出版社	中国法制出版社	2016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一本通 / 法规应用研究中心	中国法制出版社	2016	
中华人民共和国刑法及司法解释全书：含立案标准 2016 / 法律出版社法规中心	法律出版社	2016	
中华人民共和国刑法修正案(九)解读：条文说明、立法理由及相关规定 / 全国人大常委会法制工作委员会刑法室	中国法制出版社	2016	
中华人民共和国刑法：实用问题版 / 法律出版社大众出版编委会	法律出版社	2016	
中华人民共和国刑法：案例注释版 / 中国法制出版社	中国法制出版社	2016	
中华人民共和国刑法一本通 / 法规应用研究中心	中国法制出版社	2016	
中华人民共和国刑法注释本 / 法律出版社法规中心	法律出版社	2016	
中华人民共和国刑法：含修正案九及司法解释 / 法律出版社法规中心编	法律出版社	2016	
中华人民共和国刑事法律法规全书：含典型案例、立案及量刑标准：2016年版 / 中国法制出版社	中国法制出版社	2016	
(最新)交通法规汇编：2016 / 法律出版社法规中心	法律出版社	2016	
刑法罪名与定罪量刑标准精解 / 刘澄	法律出版社	2016	
刑法总论精释 = 上 / 陈兴良	人民法院出版社	2016	
刑法总论精释 = 下 / 陈兴良	人民法院出版社	2016	
刑法办案实用速查手册：定罪、量刑、罪数 / 最高人民法院刑事审判第一庭	法律出版社	2016	
刑事疑案适用法律方法研究 / 任彦君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16	
刑事政策論壇 第四輯 / 嚴勵	中国法制出版社	2016	

[상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국제운송책임법연구 V / 양석완	온누리디앤피	2016	
상법 (상) / 경익수	두남	2016	
선하증권의 실무 / 윤민현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2016	
(알기 쉬운)개정상법 : 한층 똑똑해진 개정상법 쉽게 이해하기 / 윤현철	삼일인포마인	2016	
株式會社法大系 I : 총설·주식회사의 설립·주식과 주주 / 한국상사법학회	법문사	2016	
株式會社法大系 II : 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법문사	2016	
株式會社法大系 III : 재무와 회계, 주식회사의 공시, 조직개편과 기업인수, 주식회사의 소멸,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외국회사, 벌칙 / 한국상사법학회	법문사	2016	
해사실무법 / 정영석	동방문화사	2016	
Código dos Valores Mobiliários Anotado / Moraes, Jorge Alves	Quid Juris	2015	
Estudos de Direito das Sociedades / Maia, Pedro	Almedina	2016	
Sociedades Comerciais Estrangeiras : o art. 4. do Código das Sociedades Comerciais / Vasconcelos, Pedro Leitão Pais de	Almedina	2015	
Sociedades Desportivas / Ribeiro, Maria de Fátima	Universidade Católica Editora	2015	
Títulos de Crédito / Furtado, Jorge Henrique da Cruz Pinto	Almedina	2015	
股东权利保护研究 / 刘毅	北京大学出版社	2016	
公司董事会决议效力研究 / 韩龙	法律出版社	2016	
公司法律纠纷处理依据与解读 / 法律出版社法规中心	法律出版社	2016	
公司法判例与制度研究 / 白慧林	法律出版社	2016	
公司非诉法律事务指引 / 乔路	法律出版社	2016	
法院审理保险案件观点集成 / 贾林青	中国法制出版社	2016	
保险案件司法观点集成 / 王静著	法律出版社	2016	
上市公司股权分割与传承 / 贾明军	法律出版社	2016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法规全书 / 中国法制出版社	中国法制出版社	2016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 实用问题版 / 法律出版社大众出版编委会	法律出版社	201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中华人民共和国工商法律法规全书：含典型案例及文书范本 ：2016年版 / 中国法制出版社	中国法制出版社	2016	
最高人民法院保险法司法解释精释精解 / 李志强	中国法制出版社	2016	
最高人民法院关于公司法解释（三）：清算纪要理解与适用 / 最高人民法院民事审判第二庭	人民法院出版社	2016	
最高人民法院关于保险法司法解释(三)理解适用与实务指导 / 杜万华	中国法制出版社	2016	
最高人民法院关于保险法司法解释(三)理解适用与实务指导 / 最高人民法院关于保险法司法解释(三)关联适用指引编写组	中国法制出版社	2016	
(最新)公司法及司法解释汇编：2016 / 法律出版社法规中心	法律出版社	2016	
现代公司法 = 下册 / 刘俊海	法律出版社	2016	

[사법, 소송절차, 법무]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나홀로 하는) 민사집행실무 / 김동근	진원사	2016	
네덜란드의 사법개혁과 법조인 양성제도에 관한 연구 / 김주경	사법정책연구원	2016	
동국의 법학자 / 이철호	21세기사	2016	
문답 기업회생실무 / 법무법인 중정	중정	2016	
법원청사 설계지침서 /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6	
법조윤리강의：기본이론·문제해설 / 정형근	박영사	2016	
사법 v.38 / 사법연구지원재단	사법발전재단	2016	
사법권의 이론과 제도 / 이현환	유원북스	2016	
사법보좌관실무편람：독촉절차 및 집행문 부여명령 등 I /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5	
사법보좌관실무편람：채권집행 및 배당절차 II /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5	
성공변호사 45가지 팁：시니어변호사가 들려주는 / 김재현	법률신문사	2016	
연간보고서 v.2015 /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	2016	
왜 나는 그들을 변호하는가 / 신민영	한겨레	201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우리들의 변호사 / 박준영	이후	2016	
일본 최고재판소를 말하다 : 소수자를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치유하는 헌법 이야기 / 이즈미 도쿠지	궁리	2016	
채무자를 위한 개인파산 / 이원구	피앤씨미디어	2016	
채무자회생법 / 전대규	법문사	2016	
통일 이후 안정적 통합을 위한 법적 과제 심포지엄 /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2016	
파기환송사건과 그 상고이유서 : 부동산소송, 민사본안, 집행편 = 상 / 이재성	백영사	2016	
파기환송사건과 그 상고이유서 : 상사, 일반소송편 = 하 / 이재성	백영사	2016	
回生法學 v.12 /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2016	
Código da Insolvência e da Recuperação de Empresas - Anotado : Decreto-Lei no.53/2004, de 18 de março / Esteves, Maria José	Vida Económica	2015	
Código da Insolvência e da Recuperação de Empresas Anotado / Fernandes, Luís A. Carvalho	Quid Juris	2015	
Código da Insolvência e da Recuperação de Empresas : texto da lei, notas remissivas, jurisprudência / Martins, Luís M	Almedina	2015	
Direito da Insolvência / Leitão, Luís Manuel Teles de Menezes	Almedina	2015	
Direito Profissional do Advogado / Costa, Orlando Guedes da	Almedina	2015	
Escritos de Direito Notarial e Direito Registral / Jardim, Mónica Vanderleia Alves de Sousa	Almedina	2015	
Estatuto da Ordem dos Advogados - Anotado / Leitão, Luís Manuel Teles de Menezes	Almedina	2015	
Manual de Direito Notarial : teoria e prática / Ferreirinha, Fernando Neto	Almedina	2016	
Manual de Gestão Judicial / Lopes, José Mouraz	Almedina	2015	
Partilhas Judiciais, Volume I / Cardoso, Augusto Lopes	Almedina	2015	
Partilhas Judiciais, Volume II / Cardoso Augusto Lopes	Almedina	2015	
Partilhas Judiciais, Volume III / Cardoso, Augusto Lopes	Almedina	2015	
《中华人民共和国人民法院法庭规则 / 李少平	人民法院出版社	201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家事审判理论与实践 / 广西高级人民法院	法律出版社	2016	
检察机关证据运用研究 / 王一俊	法律出版社	2016	
检察实践与规范司法 / 广州市海珠区人民检察院	法律出版社	2016	
金牌调解案例：110篇来自基层一线人民调解实践的典型案例 / 中华全国人民调解员协会编	法律出版社	2016	
未成年人保护必知法律常识 / 辛辉	中国法制出版社	2016	
法官员额问题研究 / 陈涉云	中国民主法制出版社	2016	
法院审理担保案件观点集成 / 贾林青	中国法制出版社	2016	
法院执行办案规范集成 / 法律应用编选组	法律出版社	2016	
法院执行办案实用手册 / 法规应用研究中心	中国法制出版社	2016	
法治发展与司法改革：中国与芬兰的比较 / 李林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16	
法治与改革研究 第二卷 / 陈金钊	山东人民出版社	2016	
司法改革論評 第21輯 / 張衛平	廈門大學	2016	
深圳经济特区个人破产条例草案建议稿附理由 / 卢林	法律出版社	2016	
审判流程信息公开实践指引 / 罗殿龙	人民法院出版社	2016	
让正义经得起“围观”：司法公开数字信息三大平台建设 ：审判流程 裁判文书 执行信息 / 倪寿明	人民法院出版社	2016	
广东司法报告 上卷 / 郑鄂	人民法院出版社	2016	
人民法院改革的理论与实践 / 王海清	人民法院出版社	2016	
中國檢察 v.25 / 張智輝	北京大學出版社	2016	
中国检察官论丛 第1卷 / 王守安	中国检察出版社	2016	
中国法院信息化第三方评估报告 / 中国社会科学院法学研究所国家法治指数研究中心	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16	
中國法學教育研究：2016 第1輯 / 黃進	中國政法大學出版社	2016	
中國法學教育研究：2016 第2輯 / 黃進	中國政法大學出版社	2016	
中国司法先例与案例指导制度研究 / 张骥	北京大学出版社	2016	
中国证据法治发展轨迹：1978-2014 / 张保生	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16	
中国证据法治发展报告：2014 / 张保生	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16	
中華人民共和國最高人民法院公報 v.2015 / 中國 最高人民法院	北京報刊發行局	2016	
最高人民法院关于登记立案司法解释理解与适用 / 景汉朝	人民法院出版社	2016	
破产法实践指南 / 徐根才	法律出版社	201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解讀)最高人民法院司法解釋, 指导案例: 民事卷 上 / 杜万华	人民法院出版社	2016	
(解讀)最高人民法院司法解釋, 指导案例: 民事卷 下 / 杜万华	人民法院出版社	2016	
(解讀)最高人民法院司法解釋, 指导案例: 民事诉讼卷 上 / 杜万华	人民法院出版社	2016	
(解讀)最高人民法院司法解釋, 指导案例: 民事诉讼卷 下 / 杜万华	人民法院出版社	2016	
(解讀)最高人民法院司法解釋, 指导案例: 商事卷 上 / 杜万华	人民法院出版社	2016	
(解讀)最高人民法院司法解釋, 指导案例: 商事卷 下 / 杜万华	人民法院出版社	2016	
(解讀)最高人民法院司法解釋, 指导案例: 综合卷 / 沈德咏	人民法院出版社	2016	
(解讀)最高人民法院司法解釋, 指导案例: 知识产权卷 / 陶凯元	人民法院出版社	2016	
(解讀)最高人民法院司法解釋, 指导案例: 行政·国家赔偿卷 / 江必新	人民法院出版社	2016	
(解讀)最高人民法院司法解釋, 指导案例: 刑事卷 上 / 李少平	人民法院出版社	2016	
(解讀)最高人民法院司法解釋, 指导案例: 刑事卷 下 / 李少平	人民法院出版社	2016	

[민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명도소송 실무자료 /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2016	
민사소송법 / 이현묵	홍문사	2016	
법문서 작성 / 권오봉	法文社	2016	
(새로 쓰는) 민사참여관 업무편람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발전재단	2016	
Código de Processo Civil : Leis, decretos, etc / Mesquita, Miguel	Almedina	2015	
Direito Processual Civil Declarativo : à luz do Novo Código do Processo Civil / Cunha, António Júlio	Quid Juris	2015	
Direito Processual Civil, Volume II / Almeida, Francisco Manuel Lucas Ferreira de	Almedina	2015	
(Notas ao) Código de Processo Civil : Leis, decretos, etc. Volume II : Artigos 546. ^o A 1085. ^o / Pinto, Rui Gonçalves	Coimbra Editora	2015	
(Novo Código de) Processo Civil / Rocha, Isabe	Porto Editora	2015	
Novo Código de Processo Civil Anotado / Neto, Abílio	Ediforum	201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Noções Fundamentais de Processo Civil / Rodrigues, Fernando Pereira	Almedina	2015	
Recursos no Novo Código de Processo Civil / Geraldes, António Santos Abrantes	Almedina	2016	
个案公正实现的路径依赖：以《最高人民法院公报》/ 朱福勇	法律出版社	2016	
缺席审判的基本法理与制度探索 / 杨剑	厦门大学出版社	2016	
民事訴訟法一本通：中華人民共和國 / 法規應用研究中心	中國法制出版社	2016	
民事訴訟法的變革 / 梁展欣	人民法院出版社	2016	
民事訴訟制度專題實證研究 / 廖永安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16	
民事審判指導與參考 v.63 / 中國 最高人民法院 民事審判第一庭	法律出版社	2016	
民事審判指導與參考 v.64 / 中國 最高人民法院 民事審判第一庭	法律出版社	2016	
民事判決理由研究 / 王合靜	法律出版社	2016	
新民事訴訟法配套規則適用指引：涉外程序卷 [5] / 江必新	法律出版社	2016	
中華人民共和國民事訴訟法及司法解釋全書：2016 / 法律出版社法規中心	法律出版社	2016	
最高人民法院民事訴訟司法觀點全集 = 1 / 杜萬華	人民出版社	2016	
最高人民法院民事訴訟司法觀點全集 = 2 / 杜萬華	人民出版社	2016	
最高人民法院民事訴訟司法觀點全集 = 3 / 杜萬華	人民出版社	2016	
最高人民法院民事訴訟司法觀點全集 = 4 / 杜萬華	人民出版社	2016	
最高人民法院消費民事公益訴訟司法解釋理解與適用 / 杜萬華	人民法院出版社	2016	

[형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실무중심)형사변호 / 정영훈	진원사	2016	
형사소송법 / 최영승	피앤씨미디어	2016	
法治视野下的刑事诉讼问题研究 / 姜淑华	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16	
伤残鉴定 / 中国法制出版社	中国法制出版社	2016	
審判前哨觀察 v.17 / 審判前哨觀察編輯委員會	上海人民出版社	201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侦查程序与财产权保障 / 闫永黎	中国人民公安大学出版社	2016	
中華人民共和國刑事訴訟法及司法解釋全書：含指導案例 2016 / 法律出版社法規中心	法律出版社	2016	
刑事訴訟法：全國高等學校法學專業核心課程教材 / 陳光中	北京大學出版社	2016	
刑事訴訟法通義 / 張建偉	北京大學出版社	2016	
刑事審判參考 v.102 / 中國 最高人民法院刑審一、二庭	法律出版社	2016	

[민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나홀로 하는)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 / 김동근	진원사	2016	
대망명 / 박형준	증정	2016	
민법강의 : 이론·사례·판례 / 김준호	法文社	2017	
민법의 기초 / 김준호	집현재	2016	
민법총칙 / 홍성재	대영문화사	2016	
民事法研究 v.24 / 호남민사법연구회	大韓民事法學會	2016	
(사례·서식)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실무 / 정익근	법률정보센터	2016	
(새로바뀐) 부동산관련법 개정내용 : 2016년 11월 03일 부동산 대책에 따른 /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2017	
(새로운) 實務 損害賠償 總覽 : 上卷 : 交通事故·一般不法行爲 篇 / 이승재	법률정보센터	2016	
(새로운) 實務 損害賠償 總覽 : 下卷 : 產業災害事故·特殊不法行爲篇 / 이승재	법률정보센터	2016	
(신) 사해행위취소소송 : 채권자취소소송의 이론 및 사례 / 장중운	진원사	2016	
(실전 A~Z)매출채권 관리와 회수 실무 이렇게 하라 / 이충호	법률출판사	2016	
아버지는 몰랐던 상속분쟁 / 최세영	삼일인포마인	2016	
(알기 쉽게 풀어 쓴) 물권법 / 백경일	고래시대	2016	
장례와 상속의 모든 것 : 장례 전문가와 상속 전문 변호사가 들려주는 / 임준환	꿈결	2016	
財産法研究 v.33-3 / 한국재산법학회	法文社	201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주식) 신탁법 / 광장신탁법연구회	박영사	2015	
(최신 개정된 의료법 및 판례에 의한) 나홀로 의료소송, 의료분쟁 해결하는 방법 / 김만기	법문북스	2016	
(판례로 배우는)계약법각칙 / 박영규	법원사	2016	
합법적으로 임차인을 내쫓아드립니다 :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자로 살아남는 법 / 구본기	초록비책공방	2016	
A Fundamentação de Facto e de Direito da Decisão Cível / Cabrita, Helena	Coimbra Editora	2015	
Código Civil Anotado / Neto, Abílio	Ediforum	2016	
CódigoCivil-CódigodeProcessoCivil : Leis, decretos, etc	Almedina	2016	
Direito da Família e das Sucessões / Amaral, Jorge Augusto Pais de	Almedina	2016	
Direito das Obrigações, Volume III / Leitão, Luís Manuel Teles de Menezes	Almedina	2016	
Direitos Reais / González, José Alberto R.L	Quid Juris	2015	
Dos Privilégios Creditórios / Pires, Miguel Lucas	Almedina	2015	
Tratado de Direito Civil, X : Direito das obrigações, Garantias / Cordeiro, António Menezes	Almedina	2015	
《不动产登记暂行条例实施细则》 / 李显冬	中国法制出版社	2016	
家事法实务 : 2015年卷 / 夏吟兰	法律出版社	2016	
家事法学 / 张伟	法律出版社	2016	
交通事故责任纠纷裁判精要与规则适用 / 王林清	北京大学出版社	2016	
物权法案例读本 / 七五普法图书中心	中国法制出版社	2016	
物权法的基础和进阶 / 常鹏翱	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16	
物业管理法规 / 佟颖春	中国建筑工业出版社	2016	
物業服務、相鄰關係不可不知 240問 / 法律出版社專業出版編委會	法律出版社	2016	
民间借贷纠纷裁判思路与裁判规则 / 最高人民法院民事审判第一庭	法律出版社	2016	
民法 / 李建伟	北京大学出版社	2016	
房产法律适用全书 / 中国法制出版社	中国法制出版社	2016	
房屋买卖合同纠纷裁判思路与裁判规则 / 王林清	法律出版社	2016	
法律制裁中的赔偿理论研究 / 向朝霞	知识产权出版社	201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不动产登记暂行条例实施细则实务指南与典型案例 / 李显冬	中国法制出版社	2016	
夫妻忠实义务制度研究 / 卢文捷	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16	
北京市治理交通拥堵法律问题研究 / 郑翔	北京交通大学出版社	2016	
比较民法与判例研究 = 第2卷 / 詹森林	法律出版社	2016	
信托法原理研究 / 何宝玉	中国法制出版社	2016	
医疗纠纷案例读本 / 七五普法图书中心	中国法制出版社	2016	
人身伤害：实用版 / 中国法制出版社	中国法制出版社	2016	
中国惩罚性赔偿制度研究 / 陈年冰	北京大学出版社	2016	
中華人民共和國民事法律法規全書：含司法解釋 / 法律出版社法規中心	法律出版社	2016	
中華人民共和國傷殘鑑定與賠償法規全書：含鑑定標準：2016 / 法律出版社法規中心	法律出版社	2016	
中華人民共和國)合同法律法規全書：含示範文本 2016 / 法律出版社法規中心	法律出版社	2016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一本通 / 法规应用研究中心	中国法制出版社	2016	
惩罚性赔偿研究：国家制定法和民族习惯法双重视角下的考察 / 黄娅琴	法律出版社	2016	
借款担保 / 中国法制出版社	中国法制出版社	2016	
借贷担保纠纷案例读本 / 七五普法图书中心	中国法制出版社	2016	
债权法 / 李永军	北京大学出版社	2016	
最高人民法院买卖合同司法解释精释精解 / 滕威	中国法制出版社	2016	
最高人民法院物权法司法解释(一)理解适用与案例指导 / 中國	法律出版社	2016	
最高人民法院物权法司法解释(一)关联适用指引 / 中國	法律出版社	2016	
最高人民法院物权法司法解释(一)理解与适用 / 杜万华	人民法院出版社	2016	
最高人民法院民间借贷司法解释精释精解 / 何志	中国法制出版社	2016	
最高人民法院关于买卖合同司法解释理解与适用： 條文·釋義·理由·案例 / 中國 最高人民法院民事審判第二庭	人民法院出版社	2016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城镇房屋租赁合同纠纷案件司法解释的理解与适用 / 最高人民法院民事審判第一庭	人民法院出版社	2016	
(最新)物权法及司法解释汇编：2016 / 法律出版社法規中心編	法律出版社	2016	
最新不动产登记暂行条例实务操作与案例精解 / 师安宇	中国法制出版社	2016	
侵权责任法研究 上卷 / 王利明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1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合同法案例读本 / 七五普法图书中心	中国法制出版社	2016	
婚姻法案例读本 / 七五普法图书中心	中国法制出版社	2016	

[판례총서]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人民法院案例选 v.90 / 中國 最高人民法院 中國應用法學研究所	人民法院出版社	2016	
人民法院案例选 v.91 / 中國 最高人民法院 中國應用法學研究所	人民法院出版社	2016	
人民法院案例选 v.92 / 中國 最高人民法院 中國應用法學研究所	人民法院出版社	2016	
人民法院案例选 v.93 / 中國 最高人民法院 中國應用法學研究所	人民法院出版社	2016	

• 일반도서

[총류]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국가기록원 소장) 주요 정책기록 해설집 III : 복지 편 v.3 /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2016	
국립중앙도서관 70년사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2016	
(비사서직 도서담당직원을 위한 교재)법원도서관리요령 / 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2016	
위대한 도서관 사상가들 / 고인철	한울아카데미	2016	
차세대 디지털 도서관의 이해 / 노영희	청람	2016	

[사회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監査論集 v.27 / 감사원	감사원	2016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한국의 북한인권정책 방향 : 제14차 KINU 통일포럼 / 통일연구원	통일연구원	2016	
아시아여성연구 v.55-2 /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숙명여자대학교	2016	
한국의 사회동향 v.2016 / 통계개발원	통계청 통계개발원	2016	

[자연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건축일반구조학 / 강병두	구미서관	2016	
(홍창의)소아과학 1 / 홍창의	미래엔	2016	
(홍창의)소아과학 2 / 홍창의	미래엔	2016	

[응용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부인과학 / 대한산부인과학회 교과서편찬위원회	대한산부인과학회	2015	
재활의학 / 한태륜 방문석 정선근	군자출판사	2016	
진단검사의학 /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범문에듀케이션	2016	
피부과학 / 대한피부과학회 교과서 편찬위원회	여문각	2015	

• 법률 학술잡지

[국내구입]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Legal Times Vol.101(2016. 12)	(주)리걸타임즈	월간
2	Legal Times Vol.102(2017. 01)	(주)리걸타임즈	월간
3	거래가격통권 552호(2017. 01)	대한건설협회	월간
4	考試界 62권 1호(통권 719호)	국가고시학회	월간
5	國際去來法研究 24집 1호	國際去來法學會	반년간
6	國際去來法研究 24집 2호	國際去來法學會	반년간
7	기업법연구 제30권 제4호(통권67호)	한국기업법학회	계간
8	노동법률통권 308호(2017. 01)	中央經濟社	월간
9	노동법학통권 60호 (2016. 12)	韓國勞動法學會	계간
10	도산법연구 제6권 제3호 (2016.10)	사단법인도산법연구회	반년간
11	디지털도서관 2016년 겨울호(통권 제84호)	한국디지털도서관포럼	계간
12	法과 政策研究 16집 4호 (통권 44호)	한국법정정책학회	반년간
13	司法行政 58권 1호(통권 673호)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4	속보삼일총서 통권 1369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5	속보삼일총서 통권 1383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6	속보삼일총서 통권 1400호+별책부록(2016. 12)	삼일회계법인	주간
17	속보삼일총서 통권 1401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8	속보삼일총서 통권 1402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9	속보삼일총서 통권 1403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20	시사저널 No.1418	(주)독립신문사	주간
21	시사저널 No.1419	(주)독립신문사	주간
22	시사저널 No.1420	(주)독립신문사	주간
23	신동아 2017년 01월	동아일보사	월간
24	월간 인사관리 2017. 01 vol.329	한국인사관리협회	월간
25	월간조선 2017년 01월	조선일보사	월간
26	월간조선 2017년 신년호 특별부록	조선일보사	월간
27	이나우스DB 2016년 12월	영화조세통합사	월간
28	이코노미스트 No.1364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9	이코노미스트 No.1365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30	이코노미스트 No.1366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31	이코노미스트 No.1367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32	정보관리학회지 제33권 제4호(통권102호)(2016.12)	韓國情報管理學會	계간
33	종합물가정보통권 554호 I, II호+부록(2017년 01월)	한국물가정보	월간
34	주간조선 No.2436	조선일보사	주간
35	주간조선 No.2437	조선일보사	주간
36	주간조선 No.2438	조선일보사	주간
37	주간조선 No.2439	조선일보사	주간
38	출판저널 Vol.490(2016. 11)	출판저널	월간
39	출판저널 Vol.492(2017. 01)	출판저널	월간
40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7권 제4호 (2016.12)	한국비블리아학회	연3회
41	海事法研究 28卷 3號	한국해사법학회	연3회
42	헌법학연구 22卷 4號 (2016.12)	한국헌법학회	계간
43	現代文學 2017년 01월	현대문학사	월간

[일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季刊)勞働法 255號	總合勞働研究所	계간
2	(旬刊)商事法務 2116號	商事法務研究會	순간
3	(旬刊)商事法務 2117號	商事法務研究會	순간
4	(旬刊)商事法務 2118號	商事法務研究會	순간
5	(旬刊)商事法務 2119號	商事法務研究會	순간
6	(旬刊)商事法務 2120號	商事法務研究會	순간
7	(旬刊)商事法務別冊 No. 414	商事法務研究會	부정기
8	(旬刊)商事法務別冊 No. 415	商事法務研究會	부정기
9	(月刊)登記靑報 56卷 12號 (661號)	テイハン	월간
10	NBL 1086號	商事法務	반월간
11	NBL 1087號	商事法務	반월간
12	NBL 1088號	商事法務	반월간

No	서명	발간처	간기
13	アメリカ法 2016 -1	東京大學法學部	반년간
14	ジュリスト 1500號	有斐閣	격주간
15	ジュリスト 1501號	有斐閣	격주간
16	ジュリスト別冊 労働判例百選 NO.230	有斐閣	부정간
17	パテント 69卷 13號(通卷 811號)	日本弁理士會	월간
18	パテント 69卷 15號(通卷 813號)	日本弁理士會	월간
19	國際商事法務 44卷 12號(通卷 654號)	國際商事法務研究所	월간
20	金融・商事判例 No.1504	經濟法令研究會	반월간
21	金融・商事判例 No.1505	經濟法令研究會	반월간
22	金融法務事情 2054號	金融銀行政事高研究會	순간
23	金融法務事情 2055號	金融銀行政事高研究會	순간
24	金融法務事情 2056號	金融銀行政事高研究會	순간
25	労働法律旬報 1876號	労働法律旬報社	순간
26	労働法律旬報 1877號	労働法律旬報社	순간
27	労働判例 No.1143	産勞總合研究所	반월간
28	労働判例 No.1144+부록	産勞總合研究所	반월간
29	登記研究 825號(2016. 11)	テイハン	월간
30	文藝春秋 2017年 01月號	文藝春秋	월간
31	民商法彙誌 152卷 4-5號	有斐閣	월간
32	發明 113卷 12號(2016. 12)	發明協會	월간
33	發明 114卷 1號(2017. 01)	發明協會	월간
34	法律のひろば 69卷 12號	ぎょうせい	월간
35	法律時報 88卷 13號(通卷 1106號)	日本評論社	월간
36	法律時報 89卷 1號(通卷 1107號)	日本評論社	월간
37	法律判例文獻情報通卷 456號	第一法規	월간
38	法曹時報 68卷 11號	法曹會	월간
39	法曹時報 68卷 12號	法曹會	월간
40	法學セミナー 62卷 1號(通卷 744號)	日本評論社	월간
41	法學セミナー 62卷 2號(通卷 745號)	日本評論社	월간
42	法學教室 435號(2016. 12)	有斐閣	월간
43	法學教室 436號(2017. 01)	有斐閣	월간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44	法學論叢 180卷 1號	京都大學法學會	월간
45	法學新報 123卷 5・6號	有斐閣	월간
46	法學研究 89卷 10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7	法學協會雜誌 133卷 11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48	稅法學 No.576(2016. 11)	日本稅法學會	반년간
49	損害保險研究 78卷 3號	損害保險事業總合研究所	계간
50	熊本法學 137號	熊本大學法學會	반년간
51	銀行法務 21 60卷 14號(808號)	經濟法令研究會	월간
52	日本法醫學雜誌 70卷 2號	日本法醫學會	반년간
53	自治研究 92卷 12號 (通卷 1114號)	第一法規	월간
54	自治研究 93卷 1號 (通卷 1115號)	第一法規	월간
55	早稻田法學 92卷 1號 (2016)	早稻田法學會	계간
56	租稅研究 稅制の構造改革	日本租稅研究協會	월간
57	租稅研究 財政經濟研究會報告書	日本租稅研究協會	월간
58	租稅研究 第806號(2016. 12)	日本租稅研究協會	월간
59	租稅研究 第809號(2017. 03)	日本租稅研究協會	월간
60	判例タイムズ 1429號	判例タイムズ社	월간
61	判例タイムズ 1430號	判例タイムズ社	월간
62	判例時報 2308號	判例時報社	순간
63	判例時報 2309號	判例時報社	순간
64	判例時報 2310號	判例時報社	순간
65	判例時報 2311號	判例時報社	순간
66	判例地方自治 412號(2016. 11)	ぎょうせい	월간
67	判例地方自治 413號(2016. 12)	ぎょうせい	월간
68	刑事法ジャーナル Vol.50(2016)	イウス出版	계간
69	戶籍 932號	テイハン	월간
70	環境法研究 41號(2016. 12)	有斐閣	연간

[양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1	(The) Yale Law journal Co, Inc.	연8회
2	(The)Cambridge law journal Vol.75 Part.3	The Cambrigde University	연3회
3	Actualidad Juridica aranzadi No.924	Thomson Reuters	격주간
4	AfP(Archiv für Presserecht) Jahrg.47 Hft.6	Mohr	격월간
5	Air and Space Law Vol.41 No.6	Kluwer	격월간
6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Law Vol.43 No.1	The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연3회
7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Law Vol.43 No.2	The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연3회
8	Archiv für Kriminologie; Unter Besonderer Beruecksichtigung Bd.238 Hft.5-6	Max Schmidt-Romhild KG	격월간
9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aw Vol.24 No.4(December 2016)	Springer Customer Service Center GmbH	계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71 Nr.51/52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11	BNA's Patents, Trademark & Copyright Journal Vol.93 No.2289	BNA	주간
12	BNA's Patents, Trademark & Copyright Journal Vol.93 No.2290	BNA	주간
13	BNA's Patents, Trademark & Copyright Journal Vol.93 No.2291	BNA	주간
14	BundesgesetzblattTeil I Nr.59 (2016)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5	BundesgesetzblattTeil I Nr.60 (2016)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6	BundesgesetzblattTeil I Nr.61 (2016)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7	BundesgesetzblattTeil I Nr.62 (2016)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8	BundesgesetzblattTeil I Nr.63 (2016)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9	BundesgesetzblattTeil I Nr.64 (2016)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No	서명	발간처	간기
20	BundesgesetzblattTeil II Nr.34(2016)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1	BundesgesetzblattTeil II Nr.35(2016)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2	BundesgesetzblattTeil II Nr.36(2016)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3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ol.50 No.1(2016 Fall)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계간
24	Competition Law Journal VOLUME.15 ISSUE.4	JORDAN PUBLISHING	계간
25	Computer und Recht 2016, Issue.6	Otto Schmidt	월간
26	Computer und Recht 2016. heft.12	Otto Schmidt	월간
27	Cornell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49 No.2 (2016 Spring)	Cornell University	연3회
28	Der Spiegel 2016, Nr.51	Spiegel	주간
29	Der Staat Bd.55 Hft.3	Duncker & Humblot	계간
30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ür das gesamte Aktienwesen Jahrg.61 Hft.24	Verlag Dr.Otto Schmidt Koln	격주간
31	Die öffentliche Verwaltung Jahrg.69 Heft24	Kohlhammer	반월간
32	Die Praxis 2016, Heft.11	Helbing & Lichtenhahn	월간
33	DISCOVER 2016 DECEMBER	Kalmbach publishing co.	연10회
34	DISCOVER 2016 JULY/AUGUST	Kalmbach publishing co.	연10회
35	DISCOVER 2016 NOVEMBER	Kalmbach publishing co.	연10회
36	DISCOVER 2016 OCTOBER	Kalmbach publishing co.	연10회
37	DISCOVER 2016 SEPTEMBER	Kalmbach publishing co.	연10회
38	DISCOVER 2017 January/February	Kalmbach publishing co.	연10회
39	Europäische Grundrechte Zeitschrift Jahrg. 43 hft.21-23	N.P.Engel Verlag	반월간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40	Europäische Grundrechte Zeitschrift Jahrg. 43 hft,24	N,P,Engel Verlag	반월간
41	Europarecht Jahrg.51 Hft.6	Nomos	격월간
42	FamRZ(Zeitschrift fü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3 Hft.24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	반월간
43	Goltdammer's Archiv für Strafrecht Jahrg. 163 Hft,11	R.v.Decker	월간
44	Goltdammer's Archiv für Strafrecht Jahrg. 163 Hft,12	R.v.Decker	월간
45	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ahrgang,8 Heft,23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6	Hö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 2016. Nr.12	Stollfuss	월간
47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3 no,47	BNA	주간
4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3 no,48	BNA	주간
49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3 no,49	BNA	주간
50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3 no,50	BNA	주간
51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Vol,28 No,3	Oxford Journal	연3회
52	Journa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Vol,33 No,5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53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 47 No,4	jefferson law book company	계간
54	Jura:Juristische Ausbildung Bd,38 Hft,12	Walter de Gruyter GmbH & Co, KG	월간
55	Juristen Zeitung Jahrg.71, Hft,24	J. C. B. Mohr	반월간
56	Juristische Rundschau 2016 heft,12	Walter de Gruyter	월간
57	Karlsruher Juristische Bibliographie 2013. Heft,13-15	C.H.Beck	월간
58	Kritische Justiz Jahrg,49 Hft,4	Nomos	계간
59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re 2016, N,37	Juris-Classeur	주간
60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re 2016, N,48	Juris-Classeur	주간
61	Lactualité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6, N,36	dalloz	주간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62	Lactualté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6, N.37	dalloz	주간
63	Lactualté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6, N.38	dalloz	주간
64	Lactualté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6, N.42	dalloz	주간
65	Lactualté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6, N.43	dalloz	주간
66	Lactualté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6, N.44	dalloz	주간
67	Law and human behavior Vol.40 No.6	Kluwer	격월간
68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Part.4(2016. 11)	LLP	계간
69	Monatsschrift für Deutsches Recht Jahrg.70 Hft.24	Otto Schmidt	반월간
70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6, Heft.49+Spezial.23	C. H. Beck	주간
71	NJ Neue JustizJahrg.70 Nr.12	Nomos	월간
72	NZG(Neue Zeitschrift fü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9 Heft.35	Verlag C. H. Beck OHG	순간
73	POUVOIRS(구:LA POLOGNE) 2016, No.159	EDITIONS DU SEUIL	계간
74	Recht der Arbeit Jahrgang.69 Heft.6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75	Recht und Politik Jahrg.52 Nr.3	Berliner Wissenschafts-Verlag GmbH	계간
76	Recht und Politik Jahrg.52 Nr.4	Berliner Wissenschafts-Verlag GmbH	계간
77	Rechtspfleger Studienhefte Jahrgang.40 Heft.6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	월간
78	Recueil Dalloz 2016, N.42	Dalloz	주간
79	Recueil Dalloz 2016, N.43	Dalloz	주간
80	Recueil Dalloz 2016, N.44+supplement	Dalloz	주간
81	RW(Rechtswissenschaft) Jahrg.7 Hft.3	Nomos	계간
82	RW(Rechtswissenschaft) Jahrg.7 Hft.4	Nomos	계간
83	The Economist 2016.12.17.	The Economist Group	주간
84	The Economist 2016.12.24.	The Economist Group	주간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85	The Modern Law Review Vol.79 No.6	Mordern Law Review Limited	격월간
86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9 No.14	NLP IP Company	주간
87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9 No.15	NLP IP Company	주간
88	Time 2017년 01월 16일	Time Asia	주간
89	Transportrecht Jahrgang.39 Heft.11/12	Luchterhand	월간
90	U.S News&World Report 2016. 12	U.S News&World Report	연간
91	Versicherungsrecht Jahrg.67 Hft.24	Verlag Versicherungswirtschaft	순간
92	Wissenschaftsrecht Bd.49 Hft.1	Mohr Siebeck GmbH & Co. KG	계간
93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 70 Nr.50-52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94	Zeitschrift für Arbeitsrecht und SozialrechtJahrg. 51 Hft.6	Manz	격월간
95	Zeitschrift für ausländisches öffentliches Recht und Völkerrecht Jahrgang.76 Heft.4	Kohlhammer	계간
96	Zeitschrift für Insolvenzrecht Jahrg.77 Hft.4	Carl Heymanns	계간
97	Zeitschrift für Vergleichende Rechts-wissenschaft(ZvglRWiss) Bd.115 Hft.4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98	Zeitschrift für Wettbewerbsrecht Jahrg.14 Hft.4	RWS Verlag	연5회
99	Zeitschrift für Wirtschaftsrecht Jahrg.37 Hft.50	RWS	주간
100	Zeitschrift für Wirtschaftsrecht Jahrg. 37 Hft.51-52+Ewir 24	RWS	주간
101	Zeitschrift für Zivilprozess Band.129 Heft.4	Carl Heymanns	계간